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 일본사학회 공동학술대회

탈경계의 시대와 동아시아 인식의 현재적 지평

■ 일 시 : 2020년 8월 7일 12:30~18:00

■ 장 소 : ZOOM 온라인 학술대회

일 정 표

환영사 및 개회사

사회_ 박완(강릉원주대)

12:40-12:50	환영사	한중관계연구원장	엄승준
12:50-13:00	개회사	일본사학회장	이재석

1부

사회_ 박완(강릉원주대)

13:00-13:40	제1발표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와 외교	발표_ 고은미(성균관대) 토론_ 이세연(교원대)
13:40-14:20	제2발표	아리가 나가오의 문명사론과 중국·조선	발표_ 최민혁(해군사관학교) 토론_ 유지아(원광대)
14:20-14:30	휴식		

2부

사회_ 정규식(원광대)

14:30-15:10	제3발표	제국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종혁의 생애와 민족운동	발표_ 김주용(원광대) 토론_ 서민교(동국대)
15:10-15:50	제4발표	국가총동원법 실행 이후 휘발유 배급통제 실태분석: 「국가총동원관계철」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_ 최종길(원광대) 토론_ 이형식(고려대)
15:50-16:00	휴식		

종합토론

좌장_ 방광석(홍익대)

16:00-18:00	종합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	--------------

차 례

[제1발표문]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와 외교	1
	/ 고은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토론문/ 이세연 (한국교원대학교)	15
[제2발표문]	아리가 나가오의 문명사(文明史)론과 중국·조선	16
	/ 최민혁 (해군사관학교)	
	토론문/ 유지아 (원광대학교)	30
[제3발표문]	제국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이종혁의 생애와 활동	32
	/ 김주용 (원광대)	
	토론문 / 서민교 (동국대)	50
[제4발표문]	국가총동원법 실행 이후 휘발유 배급통제 실태분석 - 「국가총동원관계법」을 중심으로 -	53
	/ 최종길 (원광대)	
	토론문 / 이형식 (고려대)	72

【제1발표문】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와 외교

고은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1. 머리말

일본은 대륙과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일본 사회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실제로 무사가 실권을 장악하여 분권화된 정치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중국이나 한반도와는 다른 역사적 전개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대 울령국가의 탄생에서 보이듯이 주변지역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움직인 시기도 존재했다. 이러한 측면은 일본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일본의 독자적인 움직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다가 가지는 이중적인 측면이 주목된다. 바다는 상대를 침략·약탈하려는 세력에게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만, 상호 간의 이익에 기반한 교류에는 그다지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하는데 바다가 방해 요소가 되었지만 평화로운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실제로 일본과 대륙 사이에 존재하는 바다는, 전쟁을 통해 상대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전근대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대군이 바다를 건너고, 그러한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곤란한 일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이 실패한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서, 상륙에 성공하여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은 병량·무기의 수송이 곤란하여 명·조선 연합군에게 대패하게 되었다. 또한 반대로 13세기 후반 1274년과 1281년의 두 차례 일본을 공격한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경우에도 실패했는데, 특히 1281년의 공격은 태풍의 영향으로 선단이 궤멸되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바다는 평화로운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본 사회는 외부와의 교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편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류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주변 지역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독자적인 체

1) 網野善彦, 『「日本」とは何か』, 講談社, 2000.

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것이 일본이 한반도나 중국과는 달리 분권적인 권력구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현한 고려의 무신정권과 일본의 무가정권이 한쪽은 단기간에 사라지고 다른 한쪽은 장기간 지속된 원인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이점을 살펴보자. 해당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와 다카하시 마사아키(高橋昌明)를 들 수 있다.

무라이 쇼스케는 12세기 말에 동시에 탄생한 고려 무신정권과 일본의 무가정권이 한쪽은 단기간에 몰락하고 한쪽은 19세기까지 존속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일본에서 처음 탄생한 무가정권인 가미쿠라마부(鎌倉幕府)가 종래의 왕권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마쿠라(鎌倉)를 본거지로 삼은 점에서 찾고 있다. 즉 정권의 권력기구나 군사력이 기존의 왕조 기구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막부의 수장과 무사 간의 주종 관계를 통한 인적 지배를 영지(領地)를 수여하거나 기존의 영지를 공인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지배와 결합시키는 자립적인 권력 편성 원리를 막부가 가진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가마쿠라 막부와는 달리 고려 무인정권이 지역적 기반을 갖지 못했던 근본적 원인은 고려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가였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집권성은 고려가 일본보다 훨씬 강하고 또한 계속적인 대외적 긴장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대외적 위기를 대비하는 군사 체제는 일원적인 의사결정과 그 의사가 말단에까지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의 무인정권이 멸망한 이유도 역시 몽골의 고려 침략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²⁾

한편 질문 자체는 같지만 다카하시 마사아키의 문제의식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무가정권이 장기간 지속된 배경을 검토한다는 면에서는 공통되지만, 무라이 쇼스케가 일본에서 권력이 분산된 정치체제가 장기간 지속된 원인을 찾는데 반해, 다카하시 마사아키는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문인이 아니라 무인이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카하시 마사아키는 '武'에 대한 중국·한반도와 일본과의 의식차에 주목하여, 문인 우위와 무인 천시의 관념이 정착했는가 아닌가로 양국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³⁾

그러나 한편으로 다카하시 마사아키는 3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경(公卿) 클래스의 상급 귀족과 이들에게 봉사하는 4·5위 대부(大夫) 클래스의 중·하급 귀족 및 6위의 사무라이로 나누고, 상급 귀족에게 문예(文藝)를 가지고 봉사는 사람이 문사, 무예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무사라고 구별하고 있다.⁴⁾ 그렇다면 문사나 문인을 우대했는가

2) 村井章介, 『増補 中世日本の内と外』, 筑摩書房, 2013, 초출 1997, 89-118쪽.

3) 高橋昌明, 「東アジアの武人政権」, 『東アジア武人政権の比較史的研究』, 校倉書房, 2016, 초출 2004, 104-105쪽.

아닌가의 문제보다 상급 귀족과 그 아래를 문사와 무사가 구성하는 구조가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다카하시 마사아키는 또한 고려에서는 무신정권을 거치며 과거를 통한 인재 등용이 본격화하여 혈통에 기반한 귀족제가 관료제로 이행한데 반해,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한 후에도 귀족제가 관료제로 전환하는 일은 없었고 지방에서도 재지 영주제가 전개되며 봉건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하고 있다.⁵⁾ 이것은 귀족제가 분권적 정치구조와 결합되기 쉬운데 반해, 관료제는 집권적 정치구조와 결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혈통에 기반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일수록 그 지위가 세습되면서 그 사회는 분권적 권력구조를 가진 세력들의 연합체적 성격이 강화되는데 반해, 개인적 능력에 기반한 과거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에서는 그의 사회적 지위가 일대에 한정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면서 그 지위를 부여하는 권력체로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셈이다. 물론 과거의 경우에도, 음서를 통한 세습이 가능하기도 했고 과거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춘 집안이 과거 합격자를 계속해서 배출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세습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던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상급 귀족과 그 이하가 온존하는 사회구조는 송의 태종이 부러워했던 왕부터 신하까지 지위가 세습되는 구조로⁶⁾ 천황제와 분리되어 평가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황제가 현재까지 지속된 배경은 무엇일까? 나카지마 게이치(中島圭一)는 중동의 아바스 왕조처럼 실권을 상실한 후에도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확립된 왕조에게는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적 관성이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천황제도 실권의 장악 여부와는 상관없이 장기간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는 질서로 작동했는데 이는 그러한 질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이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해서 천황제를 특별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⁷⁾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천황이 현재까지 일본이라는 국가의

4) 高橋昌明, 『東アジア武人政権の比較史的研究』, 校倉書房, 2016, 11쪽.

5) 高橋昌明, 「比較武人政権論」, 『東アジア武人政権の比較史的研究』, 校倉書房, 2016, 초출 2010, 147쪽. 고려의 경우 무신정권으로 문벌 귀족제(門閥貴族制)가 타도되고 과거(科擧)의 실시 횟수 및 등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문벌에서 배제되었던 학문적 소양과 행정사무능력을 갖춘 과거 관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高橋昌明, 「東アジアの武人政権」, 100쪽).

6) 『宋史』 卷491 列傳255 外國7 日本國, “984년, 태종은 일본 승려 奝然을 알현하고 위로하는 데 상당히 지극하여 자주색 범복을 하사하고 태평흥국사에 머물게 하였다. 태종은 일본 국왕이 하나의 성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신하도 모두 관을 세습한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여 재상에게 말하였다. ‘이 島夷만 대대로 즉위한 것이 오래고 그 신하 역시 세습하여 단절되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옛 도리어구나(雍熙元年, 太宗召見奝然, 存撫之甚厚, 賜紫衣, 館于太平興國寺. 上聞其國王一姓傳繼, 臣下皆世官, 因歎息謂宰相曰: 「此島夷耳, 乃世祚遐久, 其臣亦繼襲不絕, 此蓋古之道也」.”

7) 中島圭一, 「中世 1 総説・史料」, 『史学雑誌』 128-5, 2019, 74쪽.

통합을 상징하는 존재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일본이 처한 지리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사회가 어떻게 세습을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을 형성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가능했는가라는 측면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역시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상황과 연관지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침입에 대항해 단일한 정치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사회와 그러한 절박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않는 사회 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정치구조가 다른 셈이다. 예를 들어 1000년 전후의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는 한층 강화되어간다는 평가도 존재한다.⁸⁾ 이것은 중국의 정치구조 역시 북방의 유목민족과의 대립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측면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몽골의 침입 이외에는 대규모 국가 간의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일본 열도의 상황이 분권화된 권력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대외관계 역시 규정짓는 요소가 되었다. 일본의 지배층은 대외관계를 맺는 방식 역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상정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외교관계는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919년에 내향한 발해사신을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그 후 500여 년간 체결되지 않았다. 즉 수(隋)·당(唐)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 701년경에는 율령국가를 완성한 일본은 율령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이사상(華夷思想)도 수용하여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천황이 화이의 정점에 위치하여 그 지배가 미치지 않는 신라·백제·고구려·발해는 자국의 하위에 있는 번국(蕃國)으로, 당은 자국과 대등한 인국(隣國)으로 위치지었던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역학관계상 실질적으로는 당에 조공을 바쳤지만, 끝까지 책봉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국과 당은 동등하다는 인식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당이 몰락한 이후에는 중국 왕조에 조공도 바치지 않게 되면서 심화되어, 1402년에 명의 책봉을 받을 때까지 지속되었다.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사회가 대외정세에 둔감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일본 사회가 대외정세에 민감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었던 지리적 조건 및 사회적 조건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의 대응방식으로 군사적 긴장관계가 발생하면 상황에 대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관계를 동반하여 대외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대응주체는 군사력을 구사할 수 있는 세력이어야 했고 당연히 막부가 그 결정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8) 森平雅彦, 「高麗前期」, 李成市·宮嶋博史·糟谷憲一編, 『世界歴史大系 朝鮮史1—先史~朝鮮王朝—』, 山川出版社, 2017, 182쪽.

9) 石井正敏, 『東アジア世界と古代の日本』, 山川出版社, 2003, 5-38쪽.

1. 외교권의 소재

가마쿠라 막부가 대외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주로 몽골 침략을 전후로 한 시기라고 주장된다. 해당 시기에 몽골이나 고려에서 보낸 외교문서는 다자이후에 도착한 후 막부를 거쳐 조정에 보고되고 있는데, 해당 문서에 대한 답서를 조정에서 작성하여 막부에 전달하면 막부가 답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에서 작성된 답서를 폐기한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막부 측이 대외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220년대에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막부에서 파견된 슈고(守護; 무가정권의 군사지휘관)가 쓰시마(對馬)의 대고려 관계에 개입한 것은 1205년경에는 확인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고려와 일본 간에 맺어진 조공 형식의 교류인 진봉(進奉)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쓰시마와 고려는 1205년 이전부터 진봉 관계를 맺어 왕래하고 있었고, 그에 걸맞은 첩장의 형식도 정비되어 있었다. 즉 쓰시마의 사자가 진봉의 예(進奉之禮)에 적합한 문서를 가지고 고려에 건너가 금주(金州; 현재의 김해)의 왜관에 머무르면서 금주방어사(金州防禦使)에게 외교문서와 예물을 바치면, 금주방어사는 그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진봉의 예에 맞으면 사신을 접대하지만, 맞지 않으면 조정에 보고하여 그 명령에 따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205년과 1206년의 두 차례에 걸쳐, 쓰시마는 선례를 무시한 첩장을 계속해서 보내 고려로부터 첩장의 접수를 거부당하고 있다. 기존의 세력을 대신해 쓰시마의 무역권을 장악한 슈고가 선례를 무시한 교섭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⁰⁾

그 후 쓰시마와 고려 간의 진봉 관계는 폐지되지만, 그것으로 쓰시마와 고려 간의 왕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이전까지의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사적인 무역에 종사하는 쓰시마 도민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빈틈을 노려 약탈행위를 했기 때문에 1227년에 고려는 다자이후(大宰府; 규슈에 설치된 일본의 대외관계 담당기관)에 항의했다. 당시 다자이후의 현지 책임자였던 무토 스케요리(武藤資頼)는 약탈행위를 한 쓰

10) 줄고,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쓰시마(對馬)장악과 대고려관계」, 『東洋史學研究』 125, 2013, 319쪽. 당시의 쓰시마 관아의 세력관계 변화에 관해서는 『勘仲記』 弘安10年(1287) 7월 13日조에 수록된 「對馬守源光經解」를 바탕으로 추론하였다. 필자는 1201~04년경에 쓰시마 관아의 권한에 개입한 세력인 ‘大宰府使’와 ‘守護人’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쓰시마 슈고측 세력으로 추정하였으나, ‘大宰府使’를 다자이 다이이니(大宰大貳; 교토에 있던 다자이후 차관) 후지와라 치카마사(藤原親雅)와 연계된 후지와라 아키요리(藤原秋依)로, ‘守護人’을 다자이후 슈고인 무토 스케요리(武藤資頼)로 추정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荒木和憲, 「中世前期の對馬と貿易陶磁」, 『貿易陶磁研究』 37, 2017, 9쪽). 즉 ‘大宰府使’와 ‘守護人’이 각각 다른 성격의 세력이고, 당시 쓰시마에 슈고는 설치되지 않아 규슈 본토의 다자이후 슈고의 개입을 받았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추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쓰시마의 항구를 장악하여 무역선에서 입항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슈고 세력으로, 그를 기반으로 고려와의 교류에도 진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세력도 역시 슈고측으로 판단된다.

시마 도민을 처벌하고 고려에 ‘修好互市’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진봉 관계가 부활하여 1263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¹¹⁾ 이때 부활한 진봉 관계는 일본 측이 1년에 한 번 2척 이내의 선박으로 고려에 와서 무역하는 대신에 왜구를 통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한 것으로, ‘高麗國慶尚道按察使’와 ‘日本國大宰府守護所’ 간에 문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인다.¹²⁾

가마쿠라시대의 다자이후는 조정의 영향 하에 놓인 기존의 정청(政廳)과 막부의 영향 하에 놓인 슈고쇼(守護所)로 양분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양 기관의 수장 자리는 막부에서 파견한 무토 스케요리 이후로 무토씨가 다자이 쇼니(大宰少弐)로 임명되어 대대로 세습하였다.¹³⁾ 그런데 이 무토 스케요리가 고려와 교섭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외교문서를 발급한 것이 ‘大宰府守護所牒’이다. 해당 문서는 쇼군의 명령을 받아 다자이 쇼니가 작성하는 형식의 문서로 가마쿠라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문서양식이었다.¹⁴⁾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등장하여 고려에 전달된 것 자체가 외교권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일본 내에서 외교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외교문서는 1227년에서 1234년 사이에 외교 창구에 해당하는 다자이후에서 직접 조정에 보고되는 루트는 차단되어, 조정은 막부를 경유하여 외교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막부는 정보를 선별해서 조정에 전달하거나, 조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는 방식을 통해, 외교문제에 대한 막부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막부가 대외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몽고의 침입에 앞서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1260년대 이후라는 주장은 지금도 뿌리 깊지만, ‘大宰府守護所牒’이라는 새로운 외교문서가 등장한 1220년대부터 외교권은 막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다자이후 슈고쇼가 중심이 되어 고려와 맺은 정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이다. 다자이후 현지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무토씨는 고려를 약탈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약탈품을 고려에 돌려주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는데 이러한 협력은 적어도 1263년까지 확인된다. 따라서 고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국이 요청한 왜구의 통제에 협조적이고 그로 인해 자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준 세력이 일본을 대표하는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마쿠라 시대의 외교권에 대한 논쟁에서 자주 확인되는 것은, 막부가 조정에

11) 『民經記』嘉祿3年(1227) 5月 1日・5월 15日・7月 21日조; 『百鍊抄』嘉祿3年 7月 21日조; 『高麗史』高宗14年(1227) 5月・同年・元宗4年(1263) 4月 甲寅조; 『高麗史節要』高宗14年 12月・高宗15年 11月조.

12) 줄고, 「大宰府守護所と外交：大宰府守護所牒を手がかりに」, 『古文書研究』73, 2012, 5-11쪽.

13) 石井進「大宰府機構の変質と鎮西奉行の成立」『日本中世国家史の研究』岩波書店、1970, 초출 1959, 97-99쪽; 瀬野精一郎「鎮西奉行考」『鎮西御家人の研究』吉川弘文館、1975, 초출 1961, 36-50쪽.

14) 줄고, 「大宰府守護所と外交：大宰府守護所牒を手がかりに」, 5-11쪽.

15) 줄고, 「大宰府守護所と外交：大宰府守護所牒を手がかりに」.

외국에서 도착한 문서나 사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조정은 그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막부에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강조되는 점이다. 즉 외교문서 혹은 외교정보의 전달 루트라는 측면에서 외교권은 최종적으로 조정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막부가 조정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에서 작성한 외교문서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형식적인 외교권은 조정에 있었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외교는 일국내에서 완성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국이 존재한다. 상대국에 전달된 문서나 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즉 양국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가 외교권의 소재가 되는 것이지, 일국내에서 외교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¹⁷⁾

대외관계를 통해 특정 사회를 연구하는 이점은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의 시각으로 해당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 해당 사회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외교문제를 다룰 경우 일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추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 상대국들의 움직임이나 대응 역시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 종합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대외관계에서는 국내용으로 주장하는 대책과 실제로 상대국에게 실행하는 대책이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현재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 외국과 체결된 조약은 국회 다수가 승인하는 비준 절차를 거쳐 비밀 외교와 비밀 정책을 지양하고 민주적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¹⁸⁾ 그러한 상황에서도 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여 비밀 외교나 정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피통치자는 물론 통치기구내의 구성원 대다수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을 협상하고 약속하는 일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전근대에 국내용 주장과 대외적 실체가 달랐을 가능성은 더욱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외문제를 해당 국가 내부의 자료나 시각만을 기반으로 논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관례나 가치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도 외교문제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외교권의 소재를 논할 때 사용하는 외교라는 단어에는 자신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설정을 실행한 것인가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를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적 절차를 의미하

16) 川添昭二,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53-54쪽; 荒木和憲, 「文永七年二月日付大宰府守護所牒の復元—日本・高麗外交文書論の一齣—」, 『年報太宰府学』2, 2008, 6쪽; 本郷恵子, 『全集 日本の歴史 第六巻 京・鎌倉 ふたつの王権』, 小学館, 2008, 236-237쪽.

17) 외교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고에서는 한 인간 집단이 그들과는 이질적인 집단과의 관계를 질서 있게 처리한다는 의미(해롤드 니콜슨 경(Sir Harold Nicolson) 지음, 신복룡 옮김, 개정판 『외교론』, 평민사, 1998, 25쪽)로 사용하고자 한다.

18) 해롤드 니콜슨 경(Sir Harold Nicolson) 지음, 개정판 『외교론』, 91쪽.

는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른 집단과의 관계 설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권한이 해당 조직이나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 그럼에도 군주에게 외교권은 필수적이라는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외교권이 막부에 있었다는 사고방식이 천황을 중심으로 각 세력이 역할분담을 했다는 권문체제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권문체제론을 비롯한 역할분담론의 논의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역할분담론

조정 귀족과 무사의 계급대립이라는 관점에서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을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은 서양사 전문가인 하라 가츠로(原勝郎)로, 그에게는 서구적 역사발전과정을 일본에서도 발견하려는 지향과 외래문화와는 무관하게 순수한 일본성을 찾으려는 민족주의적 지향이 결합되어 있었다.²⁰⁾ 이러한 그의 역사인식은 이후 일본 역사학계의 통설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목적론에 기반한 마르크시즘적 발전단계론이 부정되면서 계급대립에 기반한 시각도 부정되었고, 서로 다른 세력 간의 투쟁이나 대립이 아닌 공존이나 협조에 기반해 역사를 파악하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²¹⁾ 이처럼 사회세력 간의 관계를 대립이 아니라 협력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무사의 발생과정을 둘러싸고도 확인된다.

무사 신분에 관해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무력행사권을 위임했고 사회 역시 그 점을 용인 혹은 묵인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²²⁾ 즉 무사는 무장세력이나 개인적으로 무술이 뛰어났다는 점에서 지칭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조정이 무력행사를 허가한 사람들로, 초기의 무사는 무관계(武官系) 무사라고 부를만한 사람들이었고 10세기 후반 이후에는 그 역할을 겐지(源氏)나 헤이시(平氏)의 군사 귀족이 계승했다는 것이다.²³⁾

이처럼 무사가 공적 권력을 통해 무력행사를 공인받아 탄생했다는 시각은 조정과 막부와의 관계를 파악한 시각과도 연동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점을 알기 쉽게 제시한 견해

19) 해롤드 니콜슨 경(Sir Harold Nicolson) 지음, 개정판 『외교론』, 72-73쪽.

20) 高橋昌明, 『武士の成立 武士像の創出』, 東京大学出版会, 1997, 2-4쪽.

21) 일본에서 무사 및 무가정권인 막부의 등장을 계급투쟁이라는 대립적 관점에서 파악하다가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국가를 형성했다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해 온 연구사에 대해서는 박수철, 「일본 중세 국가론의 현황과 과제」, 『일본비평』 11, 2014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高橋昌明, 『東アジア武人政権の比較史的研究』, 10쪽.

23) 高橋昌明, 『武士の成立 武士像の創出』, 東京大学出版会, 1997.

중 하나가 공무결합왕권론이다.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무가정권과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조정 세력이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타자를 배제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호리(堀)씨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관점으로 일본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남북조 합체 이후로, 이는 이미 주어진 세력구도 내에서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응한 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어떻게 그러한 세력구도가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조정은 처음부터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무가정권이 국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대외적 대표권까지 주도하는 상황을 허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그러한 권한들이 서서히 무가정권쪽으로 넘어간 것은 양자 간의 대립과 투쟁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²⁵⁾

양자는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확정된 세력 범위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한때 확정되었던 세력 범위라도 움직이기 마련이어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해당 세력권은 유동한다. 그럼에도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 아래에서 지속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지속된 구조는 이미 사람들의 사고에 내재화된다. 무가정권과 조정의 공존을 당연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양자가 힘을 합쳐 국가권력을 구성했다고 해서 양자 간의 대립이나 투쟁이 없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 대립이나 공무 결합이냐는 이항대립적으로 역사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다른 세력 범위나 그에 대한 인식 구조를 논해야 한다. 마르크시즘적 역사관이 전제로 한 계급대립이라는 구조속에서 구시대적인 조정 귀족을 아래로부터 등장한 무사가 전복하는 시나리오로 역사를 파악하려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제기가 조정과 무가정권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정 측은 자신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에 저항했고, 그러한 저항이 좌절되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이후에야 무가정권과의 공조를 받아들였다. 물론 조정이 그 이전

24) 堀新, 「織豊期王権の成立と東アジア」, 『歴史評論』 746, 2012, 21쪽. 조정과 막부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이라는 시각을 공유하면서도, 시대에 따라 양자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연구로는 朴秀哲, 「『公武體制』의 政治理念-室町時代の 公과 武-」, 『歴史教育』 133, 2015가 있다.

25) 공무결합왕권론의 전제가 되는 논의는 권문체제론이라고 판단된다. 정치·군사·종교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세력인 권문이 각자 고유한 역할을 행하면서 천황을 정점으로 상호보완적으로 하나의 중세국가를 형성했다는 시각인 권문체제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으로 그런 것으로 하자고 당사자들이 타협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桃崎有一郎, 『武士の起源を解きあかす』, 筑摩書房, 2018).

부터 일원적인 권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여러 권한들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무가정권이 등장하기 전부터 권력은 분산되어 있었고 조정의 직책은 특정 집안에 세습되고 있었다.²⁶⁾ 그렇다고 천황이나 조정 귀족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일본 국내의 통치를 다른 세력에게 위임할 생각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에 대한 저항을 멈춘 것도 아니었다. 그러한 저항을 멈춘 순간부터의 양자 간의 관계는 결합이나 상호보완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전의 양자의 관계는 대립과 그 대립에 따른 결과의 묵인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권문체제론과 같은 역할분담론은 사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권력투쟁을 통해서 간의 실력을 확인한 후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여 병존하게 된 세력들이 자신들의 통치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해 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직접적인 무력을 가지고 대립하는 순간에 그러한 역할분담론은 공허한 구상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러한 역할분담론에 구속된 전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전투 과정에서 획득한 토지나 사람이 전투가 끝난 후의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반환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기득권에 대한 일정한 양보를 동반한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여 그 기득권의 일부든 대부분 이든을 획득한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역할분담론으로 설명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 기득권에 도전한 세력들이 현재의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이전에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던 방식으로 행동하고 기존의 관례를 적용해도 이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예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존의 방식대로 행동해도 예전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행동 패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게 된다.

가마쿠라 막부의 탄생과정을 정리하는 연구에서도 막부를 창설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나 그 주변의 수뇌부가, 무가정권이라는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가며 나아갔다고 보는 조정이나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무사단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하는 연구경향이 주목받고 있다.²⁷⁾ 요리토모나 그 주변의 무사들 역시 과거

26) 佐藤進一, 『日本の中世国家』, 岩波書店, 1983.

27) 예를 들어, 川合康, 「治承・寿永の内乱と鎌倉幕府の成立」,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6巻 中世1』, 岩波書店, 2013을 참조. 무가정권이 반란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권한을 획득하고 정착시켰고, 단순히 조정으로부터 해당 권한에 대한 공인을 받은 측면만이 아니라 조정의 권한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었다는 가와이 야스시의 연구가 이론적 틀에 구속되지 않고 실태에 입각해 접근하는 연구 태도로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남기학, 「가마쿠라 막부론(鎌倉幕府論)의 학설사적 검토」, 『가마쿠라 막부 정치사의 연구』, 한국

천황이나 섭관가와 맺었던 관계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어떻게 가마쿠라 막부라는 새로운 무가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그들에게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결과 자신들도 의도하지 못한 새로운 정치구조를 형성했다는 식의 설명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가진 의식적인 목적은 해당 개인이 가진 선입견에 제한받는 일이 많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세상에는 개개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조류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조류는 눈앞의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가마쿠라 막부가 권한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조정이 가진 권한을 뺏으려는 막부의 의도가 먼저 존재하고 그 결과 막부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 아니다. 조정에게 기대되는 정치적 역할을 조정이 제대로 수행하려 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못하면서 해당 권한을 막부가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막부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물론 전투 중에는 실제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조정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눈앞의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단 등장한 구조는 이해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당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세력 역시 등장하고, 그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조정의 권한을 뺏으려는 막부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어떤 정치세력이 특정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기보다는 눈앞의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가마쿠라 막부라는 무가정권이 탄생했다는 시각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의 사회가 역사의 움직임을 그러한 과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에서 막부가 대외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막부의 외교문제 개입

가마쿠라 막부가 군사·경찰 문제 이외의 조정 정무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외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중국으로 도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다만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한 승려는 조정의 칙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도항이 허가되었으나 칙허 없이 밀항을 시도하는 승려에 대해서는 다자이후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1082년까지 확인된다.²⁸⁾ 한편 1170년

문화사, 2017, 초출 2014, 4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8) 森克己, 「戒覺の渡宋記について」, 『続日宋貿易の研究』, 国書刊行会, 1975, 314쪽.

에 승려 가쿠아(覚阿)는 고시라카와법황(後白河法皇)의 공인하에 송에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중앙의 관리가 유효했지만, 1187년 이후부터 확인되는 승려들의 왕래에는 다자이후의 관리나 중앙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아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²⁹⁾ 그 배경에는 가마쿠라 막부의 등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정이 주도하는 무역관리가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하에서 막부도 무역에 관여하려는 의지가 약해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에 걸쳐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외교류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³⁰⁾

그러나 이러한 막부의 태도와는 별도로 조정이 군사·경찰 문제 이외의 정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는 계기를 만든 천황가의 내분과 그에 따른 황위 계승 다툼 역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막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천황 측이었다.³¹⁾ 막부는 가능한 한 책임지는 사태를 피하려고 기계적으로 교대로 즉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권문체제론을 비롯한 역할분담론에 위화감을 느끼는 배경은 조정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정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건이 발생하면 막부가 어쩔 수 없이 해당 사건을 떠맡는 방식으로 막부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조정과 막부 가운데 결국 막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가마쿠라시대의 초기부터 막부가 외교문제에 개입한 원인에는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외교문제가 군사적 긴장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작용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외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는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919년 이후 일본 조정은 단절을 선택했다. 이후의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국의 교류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10~12세기에 걸쳐 자국에 도착한 외교문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면, 일단 조정에서 심의하여 자국이 요구하는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 문서의 경우에는 답신을 보내지 않거나, 사신에게 일본의 입장을 구두로 전달하거나, 보내온 외교문서가 무례하여 조정에 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다자이후 명의로 보내거나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³²⁾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평화로운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과의 무력충돌이 동반

29) 榎本渉,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 講談社, 2010, 134-139쪽.

30) 榎本渉, 「宋元交替と日本」,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7巻』中世2, 岩波書店, 2014, 77-80쪽.

31) 近藤成一, 『鎌倉幕府と朝廷』, 岩波書店, 2016.

32) 『師守記』貞治6년(1367) 5월 9일조; 『異国牒狀記』. 양 사료는 1367년 고려에서 왜구 단속을 요구하는 사신이 일본에 도착하자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일본 조정에서 외국의 사신이나 문서가 도착했을 때 과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이다. 『異国牒狀記』에 대해서는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가 여러 판본을 비교·검토하여 정정·보완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주로 해당 논문을 참조하였다(石井正敏, 「異国牒狀記」の基礎的研究, 『中央大学文学部紀要 史学』54, 2009).

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대외관계는 항상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커다란 전쟁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전투가 없더라도 전쟁의 공포 자체는 존재하거나, 혹은 민간의 행동이 국가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13세기에도 규슈(九州)의 주민들이 고려를 침략하는 것이 고려와 일본 간의 현안이었던 상황은 1220년대 양국 간의 진봉 관계 부활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왜구를 체포하고 처벌하거나 약탈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무력을 동원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찰권을 장악하고 있던 막부가 개입하였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 외교가 전쟁의 또 다른 형태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 일본이 취하고 있던 대외정책상,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가 아닌 한 일본 측이 외국과의 교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과의 긴장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정이든 막부든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과의 교류가 긴장을 동반하지 않는 한 외교권은 부각되는 일도 없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시기의 외교권이란 해당 정권의 통치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란 그것이 실제로 동원되던 동원되지 않던 물리력을 기반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물리력을 장악하고 일정 지역을 통제하는가가 외교권의 소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맺음말

가마쿠라시대의 상황은 외교권이 군사·경찰권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정이든 막부든 외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던 세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조정은 주로 외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막부는 이미 획득한 권한을 침범당하지 않는 한 조정의 권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외국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외교문제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과의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기본적으로 무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권과 외교권의 관계가 좀 더 극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일본과 명이 책봉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이다.³³⁾

33) 이하 일본과 명의 책봉관계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맺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村井章介, 「『日本国王』の成立—足利義満論」, 『増補 中世日本の内と外』, 筑摩書房, 2013, 초출 1997; 村井章介 「内乱と統一の連鎖—14世紀後半～15世紀前半の日明関係—」 『史友』 40, 2008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본이 명의 책봉을 받는 14세기 후반~15세기 전반은 왜구의 활발하고 광범위한 활동으로 일본의 정치과정과 중국의 정치과정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건국 직후의 명에게는 왜구 문제 해결이 구체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원말의 반란 세력으로 주원장(朱元璋)에게 패배한 방국진(方國珍)·장사성(張士誠)의 잔당이 왜구를 끌어들이며 해적행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은 처음에는 다자이후를 본거지로 북규슈를 장악하고 있던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의 아들 가네요시친왕(懷良親王)을 1371년 일본 국왕에 임명하였다. 명의 입장에서는 북규슈를 장악하여 왜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일본 국왕이 될 자격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국왕에 임명하는 명의 사신이 도착하기 직전에 가네요시는 북조 측의 공격을 받아 후퇴하였다. 그 후 명은 가네요시와 무로마치막부 양쪽으로부터 외교공세를 받게 된다. 물론 가네요시 명의로 명에 접촉한 세력이 실제로는 가네요시를 대변하는 세력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서 규슈를 둘러싼 남북조의 공방은 대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일본 국왕을 둘러싼 싸움으로 의미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명은 일본의 조공을 거부하고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방침을 취했는데, 명 조정은 1380년에 발생한 명의 정변에 '일본 국왕' 가네요시가 가담했다고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14세기 말까지 국내의 반대세력을 청산한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명의 건문제와 영락제 간의 세력다툼에 편승하여 1402년에 일본 국왕에 책봉되면서 종식되게 된다.

이처럼 명과 일본의 책봉관계 형성은 양국의 정권이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청산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고 있다. 자국민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국내에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단계를 넘어 반대세력 간의 국제적 연대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것은 내란이 외국과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구 문제는 언제든지 국내문제에서 국제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해상세력은 바다를 둘러싼 육지의 모든 정권들이 협력하지 않는 한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성장해 있었다. 바다는 적대적인 침략세력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해상교류가 가능하다는 성격은 해상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일본이 14세기 후반부터 외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맺게 된 배경에는 바다가 가진 성격으로 인해 대외관계를 결정짓는 주요한 세력으로 국가 이외에도 해상세력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구는 이미 13세기에는 고려·일본 간 교섭의 중요 요소로 등장했으나, 14세기 후반에는 중국과의 교섭에도 주요 변수가 되었던 셈이다.

【토론문】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와 외교” 토론문

이 세 연 (한국교원대학교)

본 논문은 분권으로 집약되는 일본 중세사회의 독특한 역사 전개가 궁극적으로 섬나라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가마쿠라 시대의 외교에 관한 여러 학설, 나아가 당대의 외교 실태를 조감하고자 한 논고입니다. 저자는 ①외교권의 소재는 자·타국의 사회 실태와 상호 인식 등을 총괄하여 파악되어야 하며, ②권문체제론 등 국가기능을 둘러싼 ‘역할분담론’은 결과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가마쿠라 막부를 중세 일본의 외교 주체로 자리매김합니다.

오늘날의 중세국가론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역할분담론’에 과감히 도전하고, 일본 중세사회의 역사상은 어디까지나 당대의 실태에 입각하여 재구성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서술상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면 한층 탄탄한 논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향성이 간취됩니다. 즉, 가마쿠라 시대의 외교를 둘러싼 일종의 메타히스토리가 주선율을 이루는 가운데 당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서술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느 쪽이든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할분담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할분담론> 등은 필요 최소한의 전제로 제시하고 <외교권의 소재>와 <막부의 외교문제 개입>의 내용을 확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역할분담론> 등은 <맺음말>에서 중세국가론을 전망하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외교에 관한 이야기는 중세국가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국왕권론에 대한 저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2발표문】

아리가 나가오의 문명사(文明史)론과 중국·조선

최 민 혁 (해군사관학교)

1. 문명사론과 아리가 나가오

역사가 그 시대의 불가역한 “勢”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사고방식은 전근대의 일본의 역사에서도 이미 보인다. 개국을 맞이한 일본에서는 “문명개화”가 그 시대의 “勢”의 새로운 내용을 점하게 되었다. “과거에서 현재, 나아가 먼 미래를 향해 인류 사회는 진보해 간다는 새로운 역사관¹⁾”이 나타난 것이다. 당대의 일본인들이 목격한 서양은 일본보다 훨씬 진보한 사회의 모습이었다. 서양이 동양보다 진보하였다는 인식은 일본도 서양에 뒤처지지 않게 “문명개화”의 경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진화론은 이러한 “문명개화”의 열풍 가운데 1877(메이지 10)년 에드워드 S. 모스에 의해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된 신지식이었다. 그리고 역사의 진보를 불가역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문명개화”를 역설하는 논의에 합류했다. 메이지 후기의 “문명개화”는 진화론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다. 진화론은 우주와 모든 생물에 대한 생각을 변용시키고 사회와 정치와 역사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 놓았다.

하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는 진화론에 의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가로서 대표적이다. 그의 사상은 도쿄대학의 아네스트 페노로사(Ernest Francisco Fenollosa)에 의해 처음으로 일본에 체계적으로 소개되었는데 스펜서의 사회학을 체계적인 연구서의 형태로 세상에 내놓은 것이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의 『社会学』 전3권이였다. 1883(메이지 16)년에는 『社会進化論』 『宗教進化論』 다음 해에는 『族制進化論』이 東洋館書店에서 출판되었고 1888(메이지 21)년 『宗教進化論』, 1890(메이지 23)년 『族制進化論』의 증보판 마키노서방(牧野書房)에서 간행되었다. 『社会進化論』은 최종적으로 증보 제4판이 1890년(메이지 23)년에 똑같이 마키노서방에서 출판되었다. 본고에서는 각권의 마지막 증보판을 참조하고 있다. 당초에는 제4권 『政体進化論』 제5권 『儀式進化論』 제6권 『産業進化論』도 출판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실행이 옮겨지지 못했다.

아리가 나가오²⁾는 1860년 지금의 오사카부와 효고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쯔(摂津)에

1) 荻部直 『「維新革命」への道—「文明」を求めた十九世紀日本』 (新潮社、二〇一七年) 二四九頁。

서 출생해 1876(메이지 9)년 도쿄개성학교(東京開成學校)에 문학부에 진학하였고 1886(메이지 19)년부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유학하게 된다. 그곳에서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e von Stein)에 사사하게 된다. 로렌츠 폰 슈타인은 브룬칠리 이래 독일에서 발달한 국가학의 전통을 잇는 학자였으며 사회학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하루나 노부오(春名展生) 같은 경우는 아리가가 스펜서의 감화를 깊게 받았던 시절부터 국가학에 전향한 이후에도 일관된 사상을 전개해왔다고 보기도 하는데³⁾ 그렇게 볼 때 아리가는 만년까지 일관적으로 사회학자였다고 할 수도 있다. 아리가는 사회학자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였다⁴⁾. 1882년(메이지 15)년 졸업 이후 아리가는 도쿄대학 준조교수로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한다⁵⁾. 아리가에게 있어 사회학이라는 인간사회가 진화하는 “보편현상”에 주목하여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학문이었다. 이러한 사회학적 관점에 의해 “진정한 역사”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아리가는 역사학을 “나라가 진화해서 오늘날의 개명에 이르는 차례를 기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리가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사회진화론』에서 동서 여러 나라 성쇠의 역사를 다루고자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진화론』은 “문명사”론인 것이다.

메이지 시대는 “문명사”론의 시대였다. 서양의 “문명개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동서양의 발전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고 이미 서유럽에서는 버클(Henry Thomas Buckle)과 기조(François Guizot)를 비롯한 “문명사”론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아 1895년(메이지 28)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론의 개략』이 세상에 나오고 타구치 우키치(田口卯吉)의 『日本開化小史』이 1877~82(메이지 7~12)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본 발표는 주로 외교사학과 헌법학 분야에서 주목되었던 아리가 나가오를 당대의 “문명사”론자로서 재규정 짓는 시도이다.

2) 아리가는 사회학, 외교사학, 국제법학, 헌법학 등 여러 분야에 업적을 이루었지만 공직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는데 외교관으로서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 총리대신의 비서관도 역임하기도 했다. 이토 히로부미와 아리가의 연은 깊다. 아리가는 이토 히로부미 밑에서 일했을 뿐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국가제도에 대한 배움을 구했던 로렌츠 폰 슈타인의 제자였다. 타키이 카즈히로(瀧井一博)는 로렌츠 폰 슈타인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이토 히로부미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아리가 나가오가 황실전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아리가 나가오의 이토의 교류는 단지 황실전범만에 그치지 않을 것인데 향후 아리가 나가오가 실제 메이지기의 국가제도와 외교정책과 어떻게 관여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瀧井一博『伊藤博文』(中央公論新社、二〇一〇年)二一三~二二四頁。

3) 春名展生『人口・資源・領土：近代日本の外交思想と國際政治学』(千倉書房、二〇一五年)八三~八四頁。사회학자 아리가와 국가학자 아리가를 연속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단절적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향후 아리가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4) 외교사 관련 서적을 제외하고 발표자가 확인한 아리가 나가오의 역사서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외교사 및 교과서 종류까지 더하면 종류는 더 많아진다. 『帝國史略(第2版訂正版)』(牧野書房、一八九五年) 『大日本歴史』(博文館、一九〇八年) 『西洋歴史』(博文館、一九一二年) 『日本政治史』(東京専門学校出版局、一九一五年)

5) 有賀長雄「時事雜感」(『外交時報』九五号、一九〇五年)。

2. 국민기풍론과 진화론

19세기 후반 일본에 소개되기 시작한 “문명개화”에 대한 논의는 한 국가의 “국민기풍” 혹은 “국풍(National Character)”이 어떻게 형성 되느냐 라는 논의와 관련이 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 역시 『문명론의 개략』에서 “기풍은 즉 일국의 인민이 가지는 지덕의 현상으로서 혹은 나아가고 혹은 퇴보하며 혹은 늘어나거나 혹은 감소하며 후퇴증감 한 순간도 그치지 않으며 마치 전국운동의 근원과 같다” 고 논하며 “문명”적 수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풍”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며 그 원리로서 “지덕(智德)”을 들고 있다.

막말기 이후 일본에서는 “기풍”을 둘러싼 논의들이 제기되었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동양적 전제”가 행해진다는 생각은 존재하였다. 『明六雜誌』에서 그 원인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기후(氣候)”였다.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의 번역에 의한 「인민의 자유와 토지의 기후와 서로 상관하는 논(人民の自由と土地の氣候と互に相關するの論)」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⁶⁾. 이것은 “아시아”의 기후적 조건에 의해 유럽과는 다르게 “자유”의 원리가 아니라 “전제”의 원리에 의한 지배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덕”론은 위와 같은 자연환경이 국민의 기질이나 정치체제, 혹은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기후결정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⁷⁾. 그러나 기후결정론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밀의 페노로사 강연을 보자.

그리스인은 조화묘성(造化妙成)의 땅에서 나왔기에 강직하며 예민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집트의 뜻을 이어 일단 위미(萎靡)하며 쇠퇴한 나라를 하여금 다시 부흥시키는 데에 이르렀다. [...] 생각하건대 일본의 산천이 많고 그 나라 자유의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지나 산천 도처에 하나 같고 압제의 풍이 행해지는 것도 이 이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가.⁸⁾

이 강연은 코바 사다타케(木場貞長)의 번역에 의한 1880년(메이지 13)년 『学芸志林』에 실려 있었다. 원래 강연의 시기나 장소 등 상세는 확실하지 않지만 스펜서의 전문가에 의한 최초의 사회진화론 논설이다⁹⁾. 페노로사는 여기에서 여러 민족이 거주하는 지형이

6) 기후결정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松沢弘陽『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岩波書店、一九九三年)第一章、松田浩一郎『自由の不安—近代日本政治思想論』(慶応義塾大学出版会、二〇〇六年)第五章。

7) 松沢弘陽『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岩波書店、一九九三年)第一章。

8) 「尋て希臘人出を造化妙成の地に抛り剛毅鋭敏の精神を以て埃及の志を継ぎ一旦萎靡振はさるの国をして復ひ勃興せしむるに至る。 [...] 意ふに日本の山川多くして其人自由の精神を有することを支那山川到处一様にして压制の風の行はるゝ比に非ざるは亦此理によるに非ざるを得んや。」山口静一編、前掲書、一四二頁。

9)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山口静一編、前掲書、一一六～一一七頁、〈改題〉。

이들 민족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하며 복잡한 지형에 거주하는 민족이 “자유의 정신”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아리가는 1878(메이지 11)년 도쿄대학 본과에 입학해 동년 부임한 25 살의 청년교수 페노로사에게 사사하고 있었으며 이 강연이 이루어 지던 현장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리가는 페노로사와는 다르게 기후나 지형 등의 외부적 요인은 원인들이 처음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진화의 가장 첫 단계¹⁰⁾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일단 사회가 발달하여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나서는 “국민의 성쇠에 무관계¹¹⁾”하다고 보고 있다. 아리가에게는 각나라들의 “국풍(國風)”을 규정하는 것은 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었으며 이점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와 이리가는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덕”론을 통해서 사회의 발전을 설명했다면 아리가는 “유전(遺傳)”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설명을 통해서 “국풍”의 형성을 논한다. 아리가는 “대개 국풍이라는 것은 동일 사회에 사는 자가 대대로 동일한 경험을 받음으로써 유래하는 불변의 유전이다”고 하며 “유전”을 국민의 기질을 규정하는 원리로서 생각하고 있다. 아리가가 논하는 “유전”이란 현대생물학이 말하는 유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代代同一の経験”에 의해 어떤 집단이 “견고한 기습”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에 의해 국민의 호전성, 유목 지향적인 혹은 상업 지향적인 풍습 등 같은 각 나라들의 각기 다른 풍습이 형성된다고 논한다¹²⁾.

아리가는 “유전”을 통해서 “국풍”만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며 인간의 심리현상에 대한 진화론적인 설명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인 수준의 차이를 설명한다. 아리가는 예컨대 자연현상의 “인과관계” 또한 이처럼 인간의 오랜 세대에 걸친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유전”의 결과물인 관념이라고 보고 있다. 아리가는 특히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수량이나 기하학적 관념 등을 “보편관념”이라고 하며 “유전”을 통해서 “보편관념”을 획득하여 “지력”이 진보하는 것을 아리가는 “개명” 그리고 “진화”로 생각한 것이다. 아리가는 1888 년(메이지 19)년 출판의 『教育適用心理学』에서 제임스 설리의 『心理学撮要』¹³⁾을 인용하며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10) 아리가의 사회진화의 세 단계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할 것. 「有賀は、人類がつつある生活形態の歴史的な変遷を、基本的には、三つの段階に区分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た。すなわち最初は、まだ組織的な集団を持つに至らず、人それぞれ個別的な存在として対立し競争する段階、つぎは、社会という組織的な集団の下で自己の安全と生存を維持するに至る段階、最後は、社会組織が次第に発達するにともない、国家という一層成熟した社会のなかで集団的生活を送るに至る段階である。」松本三之助『「利己」と他者のほざまで—近代日本における社会進化思想』(以文社、二〇一七) 九八頁。

11) 有賀長雄『社会進化論(増補4版)』(牧野書房、一八九〇年) 二八三頁。

12) 有賀長雄『教育適用心理学』(牧野書房、一八八五) 一九二～一九七頁。

13) Sully, James, *Outlines of psych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eory of education*(London, Longmans, Green & co., 1885).

태어나면서 지니는 능력 점차(즉 대대)로 증대한다는 관념은 근래에 나온 것으로서 진화론이 특히 유명한 이유이다. 로크 이하 전대의 심리학자는 종인의 심의를 가지고 고금 동일하다고 보며 개명의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묻지 않으며 출산의 때부터 모든 이들이 똑같은 능력을 지니는 것처럼 논하였다¹⁴⁾.

아리가에게는 인간의 본성은 천부적인 것이거나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아리가에게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개인이 속하는 사회의 “개명”의 수준에 따라 다르며 과학적인 방법 즉 진화론적인 방법에 의하여 설명될 필요가 있었다. 즉 한 인간이 살고 있는 시대 혹은 지역에 따라 인간의 지적 능력은 다를 수 있었던 것이고 특정 사회가 발전(“개명”)함에 따라 더욱 진보된 능력을 갖는 것을 아리가는 “진화”라고 본 것이다.

아리가는 위 인용에서 로크의 심리학을 진화론 이전의 학문으로서 비판하고 있는데 아리가의 또 다른 저서인 프란시스 보웬의 저작¹⁵⁾의 일역 『근세철학』에서도 아리가는 로크가 “심의 상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인식(cognition)”을 연구했다고 논하며 로크의 학문체계를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으로서 정의 하고 있다. 아리가에게 “심리학”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학문이며 철학은 “순수이학(pure science)”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리가는 로크가 “다소 심리학적인 분해와 관찰을 필요로 함은 틀림 없다¹⁶⁾”고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형이상학”적인 방법에서 단절하여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방법에 의해 “진화”를 설명하고 있다¹⁷⁾.

3. 중국론

아리가의 위와 같은 심리학적 문제의식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14) 「生まれながらにして有する能力漸次（即ち代代）増大すとの觀念は、近出に係るものにして、進化論の特に著名なる所以なり、ローク以下前代の心理学者は、衆人の心意を以て古今同一なりとし開明の何れの程度に達したるを問はず、出産の時既に衆人一様の能力を有するものゝ如く論したり」 同上、一九八～二〇一頁。

15) Bowen, Francis, *Modern Philosophy from Descartes to Schopenhauer and Hartmann*(New York: Scribner, Armstrong, 1877) pp. 62~63.

16) 보어엔著、有賀長雄訳解『近世哲学』（弘道書院、一八八四）四八～五八頁。

17) 해당 부분의 원문은 “유전”의 원리에 대한 보충 설명에 설리가 각주로서 삽입한 부분이다. 여기서 설리는 로크를 인용하면서 “유전”에 의해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발전이 인종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 태어난 유럽 인종의 아동의 능력은 오랜 세대 동안 점진적 진보를 거쳐 “열등하고 뒤쳐진 인종”의 아동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설리는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태어나면서 인종에 따라 규정되어 있고 후천적인 교육에 의한 개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는 인간의 진보를 긍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결정론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가는 설리의 인종주의적 관점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리가가 인용하고 있는 당시의 구미의 심리학서적의 대부분은 백인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기술로 가득 차 있다.

에도 적용된다. 위에서 아리가의 진화론적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았다면 이후에는 아리가가 그러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각론에서 어떤 논의를 전개하였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아리가의 『사회진화론』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분량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아리가의 독자적인 사회진화의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인 “교권일통(敎勸一統)”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중국 쪽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것은 아리가에게 중국은 “상당히 정칙에 가까운 순에 따라 진화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아리가에게는 조선이 “지나와 문물제도 매우 유사”하여 진화의 과정보다 중국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겪어왔던 역사발전의 특정 단계(“교권일통”)를 뛰어 넘은 특수한 예였던 것이다. 아리가는 “일반진화의 理를 얻고 나서가 아니면 특별진화의 理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국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1) 중국인의 심리학적 특징

아리가는 1883(메이지 16)년 『学芸志林』에 게재한 「支那西洋開化之別」이라는 논문에서 서양과 중국의 문명을 비교하고 서양의 문명의 특징은 “추상무형의 이계”에 강한 점이며 중국은 “각단일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논하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서양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아리가는 이러한 특징의 가장 큰 원인이 “공자의 가르침” 즉 “유교”라고 보고 있다. 아리가에 따르면 유교는 춘추시대의 제후들에 대해서 “주 대의 소란을 다스리기 위해 선왕의 정치는 이러이러하고 선왕의 신민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세가 번성하는 것”이라는 “독자 일행의 행장” 즉 개개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며 그 때문에 유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중국인에게는 “총괄”이 잘 안되고 과학도 발달하지 못한 것이다.

서양심리학자가 말하는 총괄(제네럴라이제이션) [...] 은 각단독기(格段獨己)의 사물 수다히 있는 가운데 이것에도 저것에도 보통 존재하는 한 갈래의 이계(릴레이션)을 발견하여 이것에 의해 그 수다한 사물을 몇 가지 부류에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지나인의 저술을 보면 확실하다. 그 가운데 구석구석까지 사물을 구별한 것이 있지만 하나 같이 모두 세 살짜리 아들도 알 수 있을 법한 외형에만 나타난 공통점에 의해 이루어진 것뿐이다¹⁸⁾.

18) 「西洋心理學者の所謂總括(ゼネラリゼーション) [...] とは格段獨己の事物數多ある中より、彼れにも此れにも普通に存在する一條の理系(リレーション)を発見し、之に依て其數多の事物を寡少の部類に區別する事を謂ふなり [...] 此事は支那人の著述を見れば明なり、其中偶々事を類別する者あるも、悉く皆三歳の兒童も知り得べきほど外形に現然たる普通點に依て爲したる者のみなり。」有賀長雄「支那西洋開化之別」(『学芸志林』第一二卷四月号、一八八三年)三七一～三七四頁。

아리가가 그리는 중국인이 “추상무형(抽象無形)의 이계(理系)”를 사고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의견은 아래에서 인용하는 『社会進化論』에서 원인의 지적특성에 대한 논의와 유사하다. 이 서술은 스펜서의 『社会学原理』에 근거하는 것이며 따라서 “서양심리학자”는 스펜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社会進化論』의 해당 개소를 제시한다. 이때의 아리가의 중국관은 스펜서의 후진사회에 대한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시인은 추상의 관념이 결핍되어 있다. 이 추상의 관념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 둘의 우상이나 사물을 관찰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갈래의 심리를 표현하는 수다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추상명목(名目)을 일절 지니지 않은 하등민족 지금도 여전히 많다. [...] 추상의 관념은 지력의 본원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생존의 기술을 개량하여 야만적인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¹⁹⁾.

또한 아리가는 “물건, 또는 사건, 또는 사람의 발동, 행위 및 관계와 같은 것에 있어서 는 원래 무형으로서 근거하여 글자를 만들 곳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발동, 특정한 행위, 특정한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며 표의문자이며 중국고유의 문자인 한자에 중국인이 추상적 사고 능력이 낮은 이유를 찾고 있다. 이것도 스펜서의 『사회학원리』가 “추상의 관념”을 가지지 못한 민족에는 추상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사고능력과 언어를 관계를 논한 것과 유사하다. 아리가는 이 단계에서는 스펜서의 영향을 받아 “개명의 도중에 머물러 무궁히 나아가지 않는” 중국을 서양에 비교하였을 때 심리학적 관점에서 미숙한 국가로서 인식하였던 것이다²⁰⁾.

(2) 중국의 역사발전론

중국사회의 “개화” 즉 발전과정에 대해서 『社会進化論』에서는 더욱 체계적 논의가 전개된다. 아리가는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군주전제”, “전국소란(戰國騷亂)”, “교권일통”, “혁명소란”, “법률일통”이라는 순서로 진보한다고 논한다. “군주전제”는 국가의 최초의 형태이며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의 권력이 견고”할 필

19) 「原人は抽象の觀念に乏し。夫れ抽象の觀念なる者は決して一二の偶像事物を觀察したりとて得らるべきに非ず、一条の心理を表現する数多の経験したる上に於て初めて得べき所なり。[...] 抽象名目を一切有せざる下等民種今尚ほ多し [...] 抽象の觀念は智力の本根なれば、是れ無きには生存の術を改良して蛮夷の陋状を脱する事難し。」

20) 그러나 일본은 중국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일본은 중국에서 한자를 수용하여 문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요가 있으며 아직 “인의도덕”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형성의 초기에는 “강압력”에 의해서만 “世人을 하여 일치동심”시켜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해 유지되는 “군주전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지력”에 의해 지배되는 “교권일통”의 사회가 시작된다.

지력은 풍전백치(瘋癲白痴, 정신병자와 백치인 사람)가 아니고서는 모두 이것을 갖추고 자손에게 전해질 뿐 아니라 사람 모두가 이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력과 같이 외부에서 추궁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에 미치지 않는다. 각인의 본심으로 들어가 안에서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영속하며 실효가 높다²¹⁾.

아리가에게 “교권일통”은 “지력”의 발달에 의해 나타난 인민의 자발적 복종에 의해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보다 진보한 사회였다. “교권일통” 사회의 통치원리인 “교리”는 예컨대 중국에서의 “유교”이며 이는 “인의도덕”의 체계이기도 하였다. “도덕”과 “지력”의 관계²²⁾에 대해서는 『教育適用心理学』에서 더 자세히 논해지는데 “도덕”은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감정이었지만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력”의 발전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아리가에게 도덕은 “의무본분의 감정”이며 “일개의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지각하여 고찰하고 선 또는 악, 정경 또는 사곡을 나눌 때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덕의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력”이 발달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특정한 행동의 선악을 “단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을 단결시키고 사람과 사회를 단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²³⁾.

아리가는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유교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아리가는 “교권일통”이 중국에서는 유교가 공인된 한나라 때에 이미 시작되어 서양의 그리스도교보다 일찍 “정체편제의 기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유교가 “족제에 근거한 교권”이었기 때문이다²⁴⁾. “족제(族制)”는 스펜서의 Domestic Institutions의 번역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제도’ 정도의 의미로 생각된다. 아리가는 자신의 사회발달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를 스펜서의 용법과는 무관하게 꽤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아리가는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사회발달”)에서 “군장(君長)의 무용(武勇) 무리에서 으뜸가고 전국민의 혈통의 장자로서 스스로를 칭하여 국신(國神)의 후예라고

21) 「智力は苟も瘋癲白痴に非ざる者は悉く皆之を備へて、子孫に伝ふるのみならず、人皆之を備ふるがゆえに、武力の場合に於ての如く、外より迫て其之を備へざる人を服従せしむるに及ばず各人の本心に立ち入りて、内よりこれに迫るがゆえに能く永続して実効も多し」有賀長雄『社会進化論(増補4版)』(牧野書房、一八九〇年) 三六四頁。

22) “도덕”이 먼저 성립해야 “개화문명”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페노로사에게도 공통된다. 山口静一編、前掲書、一二九頁。

23) 有賀長雄『教育適用心理学』(牧野書房、一八八五) 八二〇~八四〇頁。

24) 有賀長雄『社会進化論(増補4版)』(牧野書房、一八九〇年) 三七八~三八一頁。

하”는 “족장정치”가 시행되는 국면이 있으며 이것이 “견고한 관습”, “기습(氣習)”이 되어 “중인의 심리(心裏)”에 남아 있다고 논한다. 아리가는 『教育適用心理学』에서 “견고한 기습”은 “대대의 경험”이 “유전”되는 것에 의해 형성되어 그것이 결국에는 “인류일통의 편향”이 된다고 하고 있다. 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진 “견고한 기습”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서 “중인의 심리” 즉 인간의 심리학적 성격에 적합한 시스템인 것이다. 아리가는 유교가 그리스도교나 불교와 같이 사후의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유교보다 “상등에 위치한다”고 평하고 있다²⁵⁾.

아리가는 흥미롭게도 유학이 “가족의 편제”의 “조화정밀(調和靜謐)”한 모습을 모범으로 통치자와 피치자가 서로의 직분을 지키는 “호미(好美)하며 흠모할 만한” 질서를 제시하여 현세에서 이상의 세계 실현될 수 있음을 보였다고 하고 있다. 아리가는 중국문명의 특징을 “조화”라고 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문명의 가족을 모델로 하여 가능한 “(사회)조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문학론』이나 『지나정관』에서도 공통되는데 이는 아리가가 『지나정관』에서 인정하듯이 일본 또한 이러한 “족제”에 근거한 사회였으며 또한 중국문명의 영향을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아리가는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스펜서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스펜세루씨의 경우도 단지 일괄적으로 혈통을 가지고 사회의 중인(衆人)을 연결하는 것은 야만의 유풍이라고만 하지만 지금 2 천 여년 동안 그러한 성질을 지킨 사회에 생식하는 우리는 경홀히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스펜서의 아시아의 혈통중심적이고 가족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경멸적 인식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²⁶⁾.

위와 같이 아리가의 유학에 대한 평가는 「支那西洋開化之別」에 있어서 중국인의 심리학적 발전의 정체(停滯)를 강조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리가는 적어도 “교권일통”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은 사회의 진보가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학의 높은 체제안정성에 의해 “교권일통”이 붕괴지 않고 영구히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거구, 작방, 언사(規矩、作方、言辭)에만 구애되어”²⁷⁾ 사회는 다음 단계로 진보하지 못하고 정체하여 오히려 지적 수준에 있어서 퇴보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아리가는 여전히 중국·조선에 대한 “정체론(停滯論)”이다. 반면에 서양은 “교권일통”의 내부적인 모순에 의해 붕괴되어 “혁명소란”을 거쳐 진화의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고 논하고 있다²⁸⁾.

25) 同上、三七九頁。

26) 同上、三四頁。

27) 同上、四一四頁。

28) 아리가의 중국관의 전체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만년의 『支那正觀』이다. 여기서 아리가는 “제15세기 이후 서양 각국민은 장족의 진보를 이루어 실력에서 동양의 문명국민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중세에서는 유럽 문명은 중국보다도 “그 정도가 낮고 오히려 이에 열등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의 개명과 서양의 개명과 차별」에서 서양을 “추상무형의 이계”에 뛰어ना다고 논하던 것과 비슷한 논의를 전개하여 “분석 및 개괄”이라는 방법에 의해 자연현

3. 일본론

(1) 일본의 특수성

아리가는 중국과 조선의 사회적 특징을 동일시하며 조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대비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과는 사회발전의 모습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신화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중국이 사회진화의 과정에서 거쳤던 “군주전제” 사회는 일본에도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진화의 필연적 결과로서 군주의 “강압력”에 의한 지배의 한계로서 조만간 “전국소란”이 일어나 파괴되며 “교권일통”의 사회가 성립한다. 이것이 아리가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회진화의 경로이지만 일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교권일통”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아리가는 논한다. 아리가에게 그것은 일본사회의 “족제(族制)”상의 특징에 때문이다. 앞장에서 유학의 지배원리로서 중국이나 조선의 “가족의 편제”를 모범으로 한 통치를 들었는데 일본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족제”에 근거한 사회였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조선의 “족제”의 성격과는 상당히 달랐던 것이다. 중국은 국토가 땅으로 이어져 다양한 “성족(姓族)”이 공존하는 “복성(復姓)” 사회였으나 일본에서는 동일 “성족”이 일본열도에 이주하여 “단성(單性)” 사회로서 시작되었다고 아리가는 논한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형편²⁹⁾”에 의해 타민족의 침입을 간단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사회 형성 과정에서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가족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그것이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사회학』 전 3권에서는 아리가의 독특한 일본역사 발전론이 보인다. 아리가는 “단성” 사회라는 특징 때문에 일본에서의 “군주전제”는 동일 “성족”의 단결력에 의해 용이하게 파괴되지 않고 “신무(神武) 일통의 때에서부터 권세 오오오미(大臣) 오오무라지(大連)의 문족에 넘어간 때까지³⁰⁾” 계속되었다고 하며 고대일본사에 대한 정체론적 입장을 보인다. 아리가는 무열천황(武烈天皇) 때에 군주의 권력이 “오오오미(大臣) 오오무라지(大連)”에게 넘어 갔으며 “소가(蘇我) 모노노베(物部) 양씨의 투쟁”가 일어나게 되는 것

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여 “과학”을 발달시켰다고 하고 있다. 有賀長雄 『支那正觀』 (外交時報社、一九一八) 八～九頁。

그러나 「지나의 개명과 서양의 개명과의 차별」에서와는 다르게 중국의 문명이 서양 문명과 비교하여 반드시 열등하지는 않다고 논하며 중국문명의 특징으로서 “보합(保合, synthesis)”이라는 관념을 든다. 아리가는 “보합”은 “수개의 이물을 결합시켜 그 사이에 조화의 관계에 의해 새로운 사물을 낳는” 것으로서 정의되어 그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회조화의 이상이 일찍 발달”하여 중국 고유의 질서를 유지시켜 다고 논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은 “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 각자가 취지를 달리 하면서 항상 조화해서 家를 이루고 社를 이루고 鄉을 이루고 國을 이룬다”는 것이다. 同上、一五六頁。

29) 有賀長雄 『族制進化論(增補)』 (牧野書房、一八九〇) 一五〇頁。

30) 有賀長雄 『社会進化論(增補4版)』 (牧野書房、一八九〇年) 三一四～三一五頁。

을 일본에 있어서의 첫번째 전국소란”으로 상정한다. “전국소란”을 맞아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교에 근거한 “교권일통”의 사회에의 이행이 다이카개신(大化改新)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외국에서 전래된 것에 속하여 우리나라 인민의 사이에서 자연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권일통”은 실현되지 못하고 “문벌³¹⁾”에 지배되는 시스템이 300여년간 이어져 다시 “전국소란”이 발생한다. “군주전제” → “전국소란” → “교권일통”이라는 중국을 모범으로 하는 사회진화의 루트와는 다르게 “군주전제” → “제1차 전국소란” → “(다이카개신에 의한) 교권일통 실패” → “문벌지배” → “제2차 전국소란”라는 경로인 것이다. 마침내 도래한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사회에서는 유학이 부흥하여 “교권일통”의 조짐이 보였으나 이것도 막말에 일본과 서양과의 조우에 의해 일단 정지된다. “교권일통”을 경험하지 못한 일본은 따라서 중국처럼 정체를 겪지도 않았으며 그 와해 즉 “혁명소란”도 겪지 않았다.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 중국·조선이 경험한 사회진화에 있어서의 “교권일통”의 단계를 뛰어넘어 요행을 얻은 것이다³²⁾. 일본이 동양 혹은 서양국가들과 다른 발전의 경로를 거쳤다는 것은 스펜서의 입장과는 상이한 것이었고³³⁾ 아리가는 사회진화의 법칙을 보편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동서문명의 합일”의 주체로서 일본

지금까지 아리가가 일본의 사회발전의 특수성, 특히 중국과의 차이에 대한 아리가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支那正觀』에서 아리가는 “일본국민의 지나 문명에 대한 관계는 결코 외국의 문명에 대한 관계가 아니다”며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유럽 제국과 고대 그리스 문명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중국으로부터의 일본의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논한다. 아리가는 1913년 중화민국 임시 대통령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초빙되어 중국 정부법제고문으로 북경에 부임하였는데 『支那正觀』은 중화민국 정부에 대한 제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리가는 여기서 과거 『사회학』 전3권에서 전개하였던 스스로의 중국론을 정리하면서 일본이 중국과 공동의 “사회조화의 이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서양문명을 받아 들여 “서양각국과 양립하는 문명의 천지”를 실현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리가가 말하는 동서문명의 공존은 아리가가 사사한 페노로사에 의해 일찍이 주장되었다. 여기서 페노로사는 일본은 “동서문명의 합일”을 이룰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논한다.

31) 有賀長雄 『族制進化論(增補)』 (牧野書房、一八九〇年) 三〇〇頁。

32) 따라서 메이지유신은 아리가에게 “혁명이라는 이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同上、三一頁。

33) Burrow, J. W., *Evolution and Socie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187.

동서문명의 합일 즉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문명이 지나에도 인도에도 전해지고 있지만 특히 일본의 지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본이 그 합동의 중심이 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충돌해온 양방이 드디어 친밀해져 간다고 하는 그 경향이 충분히 보이는 것이 일본이다³⁴⁾.

아리가 나가오 본인이 통역을 맡았던 이 강연회는 청일전쟁 승전후 조약개정에 의한 내지잡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아리가의 생각은 어떠하였을까? 발표자는 아리가가 스스로 번역한 이 강연의 주제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아리가는 도쿄전문학교의 1895 년(메이지 28)년 간행된 강의록에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측의 전시국제법의 준수에 의해 일본이 서양열강에 대하여 “문명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인식하며 “누구도 그렇게 국제법 따위의 원리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은 나라이니 전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적군 아군으로 [나누어] 통상 따위는 할 겨를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상상하여 있었지만 통상자유[라고 일본측이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서양인은 [일본에 대해서] 꽤나 놀랐다³⁵⁾”고 논하며 “문명국” 일본에 대한 긍지를 나타낸 바가 있다. 아리가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듯이 조선과 만주에서의 일본 “문화개방” 역할을 주장하며 『保護国論』에서 보호국의 종류를 넷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제2종 보호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이 지역은 세계교통의 요로에 해당함으로 이것을 문명국교의 열에 들게 하고 그림으로써 각국과 통상교통의 길을 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미 다수의 국민과 그 문명의 계통을 달리 하는 고로 혹은 국토를 개방하는 것을 거부하고 혹은 이것과 통상교통하는 데 있어서 국제상의 힘이 결여된 바 있다³⁶⁾.

아리가는 러일전쟁후의 한국은 제2종 보호국으로서 통상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리가에게 유교에 근거한 과거의 체제에 고집하는 “교권일통” 사

34) 「東西文明の合一則ち接触と云ふものは必ずしも日本計りに限らぬ、歐羅巴の文明が支那に於ても印度に於ても伝わって居りますが、特に日本の地位が重要であると云ふのは日本が此合同の中心となるに最も適当して居るからである。是迄衝突したる両方のものが漸く親密になって行くと云ふ其傾向の十分見えるのが日本である」山口静一編『フェノロサ社会論集』(思文閣出版、二〇〇〇年)一九九頁。

35) 「何方もそんなに国際法などの原理とかなんとか云ふことは研究して居らぬ国だから軍さと云ふたら何處迄も敵味方で通商所ではないと一概に想像して居つたのが通商自由と来たから余程西洋人は驚いた」 도쿄전문학교의 강의록 출판 사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早稲田大学大学史編集所 『早稲田大学百年史(第一卷)』(早稲田大学出版部、1978) 八四五～八五四頁。

36) 「其の地域は世界交通の要路に当るを以て、之を文明国交の例に加へ、以て各国と通商交通の道を開かしむる要あり、然りと雖も、欧米多数の国民と其の文明の系統を異にするが故に、或は国土を開放することを拒み、或は之と通商交通する上に於て国際上の責任を完ふする力に欠くる所ありとせんか」有賀長雄『保護国論』(早稲田大学出版部、一九〇六年)二頁。

회를 개방하여 동서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일본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흥미롭게도 아리가의 생각은 당시의 한국에서 일정한 반향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다. 1906 (메이지 39, 광무 10)년 『皇城新聞』에서는 『外交時報』에 게재된 아리가 나가오의 논문 「保護國の研究」을 소개하며³⁷⁾ 다음과 같이 평론하고 있다.

日本法學博士有賀長雄氏が 對我韓問題に 有保護國研究論一篇に 保護之名이 雖吾輩之深耻者나 此亦吾人之皆應究解者故로 [...] 我韓이 雖被保護之名이라도 從今爲始に야 上下國民이 一體發奮振勵に야 [...] 人人皆研究於開發教育之術과 經濟實業之事に야 務圖自強之策而共結團體之力이면 何患乎國力之不發達이며 民智之不開明哉아 然則不出幾年에 將變遷而爲獨立國矣리니 日本이 亦豈欲威壓而強制哉아 此는 參互於泰西各國保護之已例に야도 亦不無證據者也라³⁸⁾。

이상의 인용에서 “보호”의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피보호국의 발전여부에 따라서는 독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반일운동의 기운이 고양되는 가운데 한국내에서 보호국론에 대단히 비판적인 논의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독립과 “문명”화를 위해서 보호국이라는 지위를 가지는 이익을 진지하게 고찰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보호국과 “문명”을 둘러싼 한국내의 논의는 한일합방후 테라우치 마사우케(寺内正毅) 총독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언론탄압에 의해 끝을 고하며 한일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4. 마무리 하며

이상으로 아리가의 “문명사론”과 그 각론으로서 중국관, 그리고 일본관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국보호국론이 아리가의 사상에서 어떤 의미를 점하는지 보았다. 아리가는 일본의 헌정체제 수립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 정치과정까지 관여했던 중요한 인물이며 일본의 외교사 및 국제법학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나 아리가는 그 비중에 비해서 잊혀진 사상가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의 특이한 외교적 행보와 또 개인적인 성격적 특이성으로 인해서 적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가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업적을 이루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할 텐데 이것은 그가 20대 때 크나

37) 『皇城新聞』一九〇六年三月一三日字。

38) 『皇城新聞』一九〇六年三月一五日字。

큰 영향을 받았던 스펜서의 “종합철학(The Synthetic Philosophy)”도 마찬가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발표자는 “문명사론”이라는 기존의 메이지 연구의 중요한 주제와 관련하여 아리가 나가오를 재정립하고 메이지 후기 일본정치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아리가 나가오의 연구를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비록 본 발표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리가 나가오의 동아시아론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그것에 대한 중국 및 조선(한국)의 대응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일본 정치사상연구에 그치지 않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근대사적 전환기의 동아시아의 “문명”론에 대한 연구로서 아리가 나가오의 연구는 그 의의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문】

<아리가 나가오의 문명사론과 중국·조선> 토론문

유 지 아 (원광대학교)

1. 아리가 나가오가 메이지 초기 중요한 외교가이자 정치가, 사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한 점에 대해 결론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작업한 황실전범 이외에 아리가 나가오의 메이지기 국가제도와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고의 주에서 타키이 카즈히로 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2010년에 출판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구업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합니다. 왜냐하면 본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사론이라는 기존의 메이지 연구의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아리가를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에 와서 아리가를 재정립하는 이유로 기존 문명사론이라는 기존의 메이지 연구의 중요한 주제를 다른 다른 사상가 및 사회학자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아리가를 사회학자와 국가학자의 연속성인가 단절성인가를 보는 관점은 이후 논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학자와 국가학자로 보는 관점에서 가장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저자는 아리가가 중국을 서양에 비교하였을 때 심리학적 관점에서 미숙한 국가로 인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p.7) 그러한 논거로 추상을 사고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보편관념을 획득하지 못한다거나, 표음문자인 한자로 인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28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보합이라는 수개의 이물을 결합시켜 그 사이에 조화의 관계에 의해 새로운 사물은 낡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고유의 질서를 유지시켰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상무형의 이계와 보합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그 차이에서 발생한 중국의 미개성을 다시 한번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결론적으로 아리가가 본 중국은 어떠한가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가는 외교관, 정치가, 사상가일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의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정책 등에 따라 생각이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리

가의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사상이나 논리에 대한 추상무형의 이체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일본의 독창성 군주전제(단성사회)→제1차 전국소란(소가VS모노노베 투쟁)→교권일통(다이카개신)→문벌이 지배되는 시스템→제2차 전국소란→도쿠가와 막부(교권일통 실패) 이라고 설명하는데 아리가는 메이지유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메이지유신 이후의 메이지헌법 등을 법률일통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천황제는 다시 군주전제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리가의 다른 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음을 밝히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제3발표문】

제국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이종혁의 생애와 활동

김 주 용 (원광대)

1. 머리말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결출한 활동을 전개한 인물 가운데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상당수 있다.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을 지냈던 노백린(육사 11기)과 무관학교 교관을 지냈던 이갑(육사 15기), 유동열(15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일본 육사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는 지청천, 이응준, 홍사익, 이종혁 등도 있다.¹⁾ 이 글에서 다룰 이종혁은 지청천, 홍사익, 이응준에 비하여 덜 알려진 인물이다.

“그말 한마디가 어디 입에서 떨어지던가요”. 이종혁은 나직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잔잔한 눈길로 외우 유봉영의 얼굴을 건너보면 쓸쓸히 웃었다. “그 말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그렇게 고생을 안하셔도 되실뻔 했쎄다레”²⁾

1965년 현대문학 5월호에 실린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선우휘의 단편소설 ‘마덕창대인’의 첫 소설이다. 선우휘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던 마덕창 즉 이종혁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이자 일본 육사 27기로 졸업한 군인이었다.³⁾ 무관학교가 폐교되고 제국 일본은 마지막 무관생도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일본식 교육을 시켰다. 그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생도들은 총 42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종혁과 같이 일본군대를 탈출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이청천(본명 지석규), 조철호, 이동훈 뿐이다.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제국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유동열(15기), 김경천(23기), 지청천(26기), 이종혁(27기) 등이다.⁴⁾ 김경천과 지청천 보다

1)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

2) 선우휘, 「마덕창대인」, 『현대문학』, 1965.5.

3) 이 글은 소설가 이원규 작가와의 답사 때 영감을 얻어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종혁이 평양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때 유봉영에게 보낸 엽서의 복사본 등 다양한 자료도 제공해주어서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뒤에 일본군대를 탈출하여 1920년대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의 핵심기관이었던 참의부 군사위원장을 역임하게 된 이종혁의 일생을 복원하고자 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이종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박경에 의해 이루어졌다.⁵⁾ 그는 ‘참의부군사위원장’ 이종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서 일본 육사로 가게 된 동기와 상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결혼과 딸의 행방 및 만주 망명과 풍옥상 부대에서의 활동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군대해산 및 마지막 생도들의 일본행을 살펴보면서 제국 일본의 군인 ‘친일파’키우기의 단면과 이종혁의 육사 시절, 시베리아 출병 및 일본군 탈출과 참의부 활동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가 1928년 체포된 후 5년을 복역한 후 순국하기까지의 과정과 충무공 후손이자 일본 육사출신이며 독립운동가였던 그의 삶을 개인의 고뇌와 국가의 시각에서 살펴보려 했다.⁶⁾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국가의 정체성 확보라는 ‘脫我立國’의 전형을 보여준 이종혁의 인생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려 했다.⁷⁾

2. 가계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시절

이종혁은 1892년 충남 당진군 송산면 명산리에서 태어났다.⁸⁾ 그는 덕수 이씨 문해공과 李瑾永의 6남매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⁹⁾ 이근영의 부친 李民大(1821~1890)는 무과를 급제하고 선전관이라는 관직도 제수받았다.¹⁰⁾ 근영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4) 이갑(15기)은 독립군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신민회 활동 등으로 쇠잔한 몸을 이끌고 망명한 후 요양하였으며, 조철호(26)는 만주로 탈출하려다 체포되었다. 참고로 일본 육사 26기와 27기 가운데 만주에서 제국 일본 입장에서 활동했던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만주국 관료로 임명된 염창섭(26기), 윤상필(27), 안병범(2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윤상필과 안병범은 만주사변의 공로를 인정받아 1935년 훈장을 받게 되었다.

5) 박경, 「참의부군사위원장 이종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6) 이기동 교수는 이응준이 “나에게 보인 호의는 비록 정책적인 회유의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내가 겪은 어느 일본인보다도 생각과 행동이 큰 거인이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큰 거인이었던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의 배려로 해방까지 약 25년간 한반도에서 근무하였다고 지적하였다(이기동, 「이응준, 국군 창설의 산파」, 143~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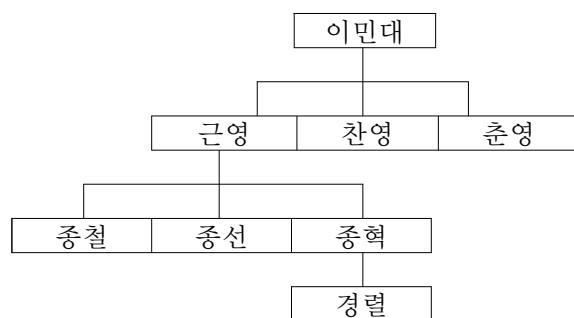
7) 2020년 7월 11일 ‘대한민국 국군 영웅’ 백선엽 장군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20대 만주국 조선인 특설부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던 그가 해방과 한국전쟁 속에서 한국군의 영웅으로 자리잡았다. 어쩌면 한국군의 민낯 같다. 독립군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빈한 삶’을 살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실은 한 개인의 삶이 어떠한 조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척도라고 할 수 있다.

8)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이종혁의 생년월일은 1892년 8월 17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망연도는 1941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덕수이씨 문해공과 족보에는 이종혁 출생일을 1892년 8월 11일로 기록되어 있다(『덕수이씨문해공과 족보』, 덕수이씨 대종회 이충렬 총무이사 제공). 그가 사망한 해는 1935년 12월 14일이다(『조선중앙일보』).

9) 『덕수이씨문해공과 족보』참조.

10) 『승정원일기』 1886년 4월 18일.

향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종혁의 큰형 종철은 무과 급제 후 통정대부에 제수되었다. 이처럼 그의 가문은 무반으로 크게 관직에는 나가지 못하였지만, 그 명맥은 유지되었다. 그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덕수이씨문혜공파 족보』, 310~314 참조.

이종혁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한 배경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의 선대가 무반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문의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¹¹⁾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 신식군대의 지휘와 훈련에 필요한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896년 1월 설립되었다.¹²⁾ 하지만 아관파천 등 국내외 정세 변동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1898년 4월 무관학교 실시에 관한 공식 건의서가 올려지고 5월 칙령 제11호로 문관학교 관제가 개정, 공포되면서 7월 비로소 다시 개교하였다. 제1회 200명 정원에 1,700여 명이 응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무관학교의 인기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900년 9월 칙령으로 관제가 개정되었는데, 당시 무관학교 관제에 의하면, 군부의 장령, 위관의 추천이나 칙임관의 추천을 받아 학도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¹³⁾ 이러한 규정에 의해 추천된 응시생들은 대부분 군부의 장교나 칙임관의 자제들이었다. 이들은 초급 교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교과목은 전술학·군제학·병기학·축성학·지형학·위생학·마학·외국어학 등이었다. 그 밖에 교관의 덕목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체련단련 등을 집중 연마하였다.¹⁴⁾

러일전쟁 후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특권을 확보한 일제는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고문정치를 통해 전방위로 대한제국을 압박하였다. 그 결정판이 1907년 7월 이루어진 ‘정미조약’이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군대해산이었다. 한국군대는 시위보병 1개 대대를 제외하고 해산한다는 것이 골자였다.¹⁵⁾ 군대가 해산당하고 순종이

11) 한시준,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까지, 황학수』, 역사공간, 2006, 24쪽.

12) 차문섭, 「구한말육군무관학교 연구」, 『亞細亞研究』 제16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78쪽.

13) 한시준, 앞의 책, 24쪽.

14) 차문섭, 앞의 글, 193쪽.

즉위한 지 24일만에 무관학교 관제가 개정되었다. 군대해산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군부의 군무국 교육과에 예속되었으며, 학도의 호칭도 이때부터 생도라 칭하였다. 이들은 어학, 보통학, 군사학 등 3과로 나누어 각과 1년씩 3년 동안 수학하게 하고 학도 모집도 1년에 25명 이내로 감소하였다.¹⁶⁾

1907년 8월 군대해산은 대한제국의 많은 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¹⁷⁾ 새벽 7시에 각 시위대의 대대장급 이상 장교가 긴급 소집되어 군부대신 이병무가 해산 조칙을 발표하였다. 곧이어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는 장교들은 해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때 朴昇煥은 참가하지 않았다.¹⁸⁾ 박승환 참령은 8월 1일 일본군 사령관 관저로 집합하라는 긴급 소집 연락을 받았지만 稱病하고 중대장 김재흡 정위를 대리로 참석시켰다. 박승환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 한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뜻의 유서를 남기고 권총으로 자결하였다.¹⁹⁾

이와 함께 제2연대 제1대대 중대장이었던 吳儀善 정위도 박승환이 자결한 날 칼로 자정 순국하였다.²⁰⁾ 오의선은 1900년 무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하고 1902년 7월 시위보병 제1연대 견습생으로 군인의 길을 갔다. 보병 참위에 임관한 후 1906년 보병 정위이자 진위보병 제1대 중대장을 맡았다.

南相應 역시 병사들을 독려하여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경상남도 의령출신 남상덕은 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보병 참위로 임관하였고 군대해산 당시에는 제2연대 제1대대에서 근무하였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²¹⁾과 충의에 대하여 『대한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기사화했다.

향일에 시위대 대장 박성환씨 죽을 때에 부위 남상덕씨가 충분히 격발하므로 병정을 지휘하여 일병과 접전하는데 일본장수 미원(梶原義久, 필자주)씨는 여순구싸움(러일전쟁, 필자주)에 큰 공을 이룬 사람이라. 남상덕씨 총에 맞아 죽었는지라. 한병의 탄환이 다 함을 보고 일병이 독하게 싸와 남씨도 죽었는데 지금까지 한국병정 마다 남씨의 충의와 지략을 강동하여 울지 아니하는 자가 없고 일병도 미원씨의 죽은 것을 대단히 애석히 여긴다더라²²⁾

李峻永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1900년 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02년 졸업하였다.

15) 『통감부 공보 호외』, 1909년 7월 31일(통감부고시제71호), 「군부폐지, 친위부신설급이에 부대하는 건」.

16) 차문섭, 앞의 글, 124~125쪽.

17) 대한제국 무관학교는 군대 해산 당시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었다(「韓國駐劄軍 韓國軍隊解散に関する件」, 1907년 8월 2일, 『밀대일기』).

18) 장석규, 「구 한국군의 애국정신-1907년 군대해산 시기를 중심으로-」, 『군사사연구』 1987, 199쪽.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0, 461쪽.

20)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일, 「오씨도자처」.

21)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를 뒤에야 집에 전달하게 되었다고 한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4일, 참혹한 경상).

22)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0일, 남씨의 충의.

육군 참위로 임관한 후 군대해산 당시 정위로 활동하다가 일본군과 교전시 순국하였다.²³⁾ 李忠純은 남상덕과 함께 군대해산 시 충절 군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그 이유로 그가 순국하기 전에 부친에게 편지를 썼으며, 이것이 그의 지극한 효성과 충군 애국의 강직한 군인정신의 표상이라는 점이 부각된 것 같다.²⁴⁾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무관학교 출신들은 사력을 다해 군대해산을 막아보려 했다. 그 결전에서 한국군 전사자 70명, 부상자 100명인데 반하여 일본군 전사자는 4명이었으며, 부상자는 18명으로 파악하였다.²⁵⁾ 군대해산시 이병무와 같이 이미 일제에 협력을 약속한 상관들의 명령에 자결과 항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아닌 조국의 안위를 지키려 했던 점은 군대해산으로 비록 정규군의 정체성은 상실되었지만 무장 항일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²⁶⁾

한편 대한제국 군부에서는 1907년 9월 육군 무관학교 학도 50인을 加選하기 위해 한문, 독서, 작문, 산술, 역사, 地誌, 외국어를 시험으로 치러야 했다. 입학 연령은 18세에서 20세로 한정하였다.²⁷⁾ 이때 모집되어 입학한 인물들은 홍사익, 지청천, 조철호 등이다. 다음해 1908년 10월 10일자로 대한제국 무관학교 생도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원자는 11월 25일까지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했다.²⁸⁾ 이종혁은 이때 1,00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되어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로 남게 되었다.²⁹⁾ 이종혁은 김석원과 동기였다. 당시 교관으로 오구라 유사부[小倉祐三郎]로 대위가 수석교관의 위상을 벗어나 무관학교의 운영을 장악해 갔다. 그는 무엇보다도 절대복종을 강조하였다.³⁰⁾

1909년 9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 폐교 절차를 밟았다. 군부가 폐지되면서 무관학교 역시 그 운명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³¹⁾ 1908년 5월 무관학교 교장 노백린이 퇴임하고 이희두가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사건이었다. 일본 육군성과 한국주차군은 명맥만 남은 대한제국 군부와 무관학교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남

23)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일.

24) 박민영, 앞의 글, 65쪽. 이충순의 생애 및 무관학교 생활과 그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편지 등 새로운 자료를 분석하여 그의 일대기를 연구한 박민영, 앞의 글 참조.

25) 『密大日記』 명치 40년, 제14헌병대장보고, 기밀 273호, 1907년 8월 7일.

26)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교관 및 교장으로 활동했던 노백린과 이갑에게도 군대해산은 큰 충격이었다. 특히 이갑은 고종 양위반대에 거사에 가담하여 옥고까지 치루었다(이정희, 『내 아버님 추정 이갑』, 129~134쪽).

27) 『대한제국관보』 광무 10년 9월 11일, 「유년학교 무관학교 생도모집」.

28) 『황성신문』 1908년 10월 20일자, 「육군무관학교 생도 25명을 모집할 터이니」.

29) 김좌진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는 그가 1907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주지하듯 김좌진은 한국독립운동에서 거목이었다. 이러한 그에 대해 오히려 학력에 대한 부정확한 표기를 그의 위대한 업적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0) 김석원, 『노병의 한』, 육법사, 1977, 49쪽.

31)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7일.

한대토벌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던 한국주차군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대한제국 군부의 존재를 용인할 필요가 없었다. 1909년 7월부터 수많은 문건들이 현해탄을 건너 대한제국 무관학교 학생들을 일본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³²⁾ 결국 1909년 7월 30일 조치가 내려져 무관학교의 폐교가 결정되었다. 1909년 8월 2일 무관학교 교장 육군참장 이희두와 생도들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³³⁾ 이 자리에서 이희두는 융희황제가 내린 칙령을 읽었다.

짐이 앞으로 신민들의 발달 정도를 보아 増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군부와 무관학교를 폐지한다. 현재의 군사는 궁중에 친위부를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고 사관 양성은 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해서 군사 일에 숙달하게 하는 바이니 너희 백성들은 짐의 의도를 잘 헤아리라.³⁴⁾

경시총감은 현장에 경찰을 파견하여 이희두의 해산 선언과 생도들의 향배에 대한 상황을 통감에게 보고하였으며, 통감은 육군대신 寺內正毅에게 전문을 보냈다.³⁵⁾ 9월 10일 이전까지 자택에 대기하고 있으며, 총 45명 생도 가운데 일본으로 유학하는 생도는 44명이라는 내용이었다. 제국 일본은 한국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유년학교의 정원을 늘렸다. 그리고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파견 교관이었던 小倉祐三郎 육군 대위 등을 한국학생들의 학과 담당으로 배정하였다.³⁶⁾

3. 일본 육군사관학교 입교와 독립군 ‘토벌’

무관학교에서 일본군 오쿠라 대위와 일본하사관들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통감부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폐교되자 ‘마지막 무관생도’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비롯한 각종 지표를 발표하였다. 전체 44명 가운데 정훈을 제외한 43명이 일본으로 가는데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³⁷⁾ 하지만 일본에 간 최종 인원은 42명이었다.³⁸⁾ 그 전체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 「육군무관학교 생도 학력정도 인원별표」, (1909년 7월 28일, 주차갑 제704호).

33) 『밀대일기』, 「무관학교생도해산의 상황에 관한 건」, 1909년 8월 2일 기밀제2329호-1 ;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3일.

34) 『밀대일기』, 「무관학교 생도 해산의 상황에 관한 건」, 1909년 8월 5일 기밀통발 제1405호.

35) 『밀대일기』, 「무관학교생도해산의 상황」 기밀통발제1405호, 1909년 8월 5일.

36) 『밀대일기』, 「한국사관양성기타에 관한 건」, 참제 594호, 1909년 8월 12일.

37) 『밀대일기』, 「한국무관학교생도 교양에 관한 건」, 제1693호, 1909년 8월 16일.

38) 『밀대일기』, 「한국학생인원 통첩의 건」, 군사일제184호, 1909년 9월 4일.

한국육군무관학교학생유학생 명부(총43)

순위	이름	연령	유년학교 학년	학과	술과	성질/躬行	체격
				일어/기타	교련/체조		
1	염창섭	19년 1월	2	갑/갑	중/중	直敏/方正	强壯
2	홍사익	20년 5월	2	갑/갑	중/優	質直/方正	壯
3	지석규	21년 5월	2	갑/갑	중/중	솔직/방정	장
4	유승렬	18년 3월	2	갑/갑	우/우	침착/방정	강장
5	권영한	21년 7월	2	갑/갑	중/劣	優柔/正	조약
6	신태영	18년 2월	2	갑/갑	중/우	민첩/방정	장
7	이웅준	18년 1월	2	갑/갑	중/우	온직/방정	강장
8	안종인	18년 2월	2	갑/갑	우/우	質朴/방정	조약
9	이호영	19년 2월	2	갑/갑	중/우	민첩/정	강장
10	조철호	19년 4월	2	갑/갑	중/우	朴直/정	강장
11	이은우	20년 2월	2	갑/갑	중/우	直/정	장
12	박승훈	20년10월	2	갑/갑	중/열	직/단정	장
13	민덕호	22년 1월	2	갑/갑	중/중	박직/稠正	장
14	김준원	18년10월	2	을/을	중/중	輕淳/정	장
15	남상필	17년	2	을/을	중/중	온화/정	장
16	이건모	19년 6월	2	을/을	열/열	온화/정	조약
17	이희겸	20년 8월	2	을/을	중/중	우직/정	조약
18	장성환	18년 8월	2	을/을	중/중	온화/정	조약
19	원용국	17년 9월	1	을/을	열/중	00/단정	강장
20	윤상필	19년	1	을/을	열/열	질박/방정	강장
21	장석륜	17년 5월	1	을/을	중/중	민첩/방정	강장
22	서정필	17년 7월	1	을/을	중/열	민첩/방정	장
23	박창하	15년 6월	1	을/을	열/열	온순/방정	조약
24	민병은	17년 6월	1	을/을	열/열	솔직/방정	강장
25	김종식	18년 11월	1	을/을	열/열	우직/방정	장
26	강우영	18년 11월	2	병/을	중열	우직/정	장
27	장기형	22년 3월	2	병/을	중/열	우직/정	장
28	이강우	21년 8월	2	병/을	중/열	우직/정	조약
29	류춘형	18년 8월	1	병/을	열/열	침착/방정	조약
30	김석원	15년 10월	1	병/을	중/중	민첩/방정	조약
31	장유근	18년 6월	1	병/을	열/중	민첩/정	강장
32	이동훈	19년 4월	1	병/을	열/열	우직/정	강장
33	이웅섭	17년 11월	1	병/을	열/열	질박/정	장
34	김중규	16년 3월	1	병/을	열/열	침착/방정	조약
35	류관희	18년 2월	1	병/을	열/열	온순/방정	조약
36	백홍석	19년 6월	1	병/을	열/열	솔직/방정	강장
37	이종혁	18년 11월	1	병/을	열/열	온순/방정	장
38	정동춘	18년 0월	1	병/을	열/열	온순/방정	조약
39	신우현	18년 09월	1	병/을	열/열	온순/방정	조약
40	윤우병	19년 6월	1	병/을	열/열	조방/정	강장
41	남태현	18년 3월	1	병/을	열/중	활발/단정	조약
42	김인옥	18년 3월	1	병/을	열/중	활발/단정	강장
43	이교석	17년 1월	1	병/을	열/열	조방/정	장

* 「한국육군무관학교 유학생 명부」, 주차감제316호, 1909년 7월 30일.

1위는 염창섭, 2위는 홍사익, 3위는 지식규(지청천)이었으며, 이종혁은 43명 가운데 37위에 해당하였다. 가장 어린 생도는 15년 6월의 박창하였으며, 연장자는 22년 3월의 장기형이었다. 1909년 9월 3일 이종혁은 남대문에서 환송식에 참가한 후 일본으로 출발하였다.³⁹⁾ 일본 육군유년학교 생도들과 같은 정복을 입었으나 대한제국 소속의 생도임을 알 수 있는 오얏꽃 모표와 분홍색 금장 표식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주차군사령부에서 지급한 피복이 담긴 雜囊을 하나씩 메고 있었으며, 융희황제가 준 군인칙유 카드를 휴대하였다.⁴⁰⁾

1909년 9월 6일 오쿠라 대위의 인술을 받고 도쿄에 도착한 생도들은 바로 陸軍中央幼年學校로 이동하였다.⁴¹⁾ 당시 육군중앙유년학교 교장 久能司는 육군대신 寺內正毅에게 한국 학생들의 신원 조사를 보고하였다.⁴²⁾ 이렇게 대한제국 무관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인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는 1887년 6월 메이지의 유년학교 관제 공포하고 1889년에 생도를 모집하였다. 유년학교는 생도들을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양 있는 장교로 키우기 위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와 피아노를 교수하였다.⁴³⁾

이종혁은 유년학교에서 적응 기간을 거쳐 정규과정을 밟았다.⁴⁴⁾ 대한제국 무관학교 1년 선배들이 예과 3학년으로 입학하였으며, 자신은 2학년으로 편입되었다. 유년학교의 생활은 대한제국의 교과목과는 달랐지만 이미 대한제국 무관학교 생도시절부터 일본인 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예과 3학년 편입한 한국 무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유년학교 교육이 끝나고 사관후보생으로 군대 및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상주서를 1912년 5월 17일 육군대신 데라우치가 내각총리대신 桂太郞에게 보고하였다.⁴⁵⁾ 그해 본과 15명, 예과 23명이었다. 본과는 5월 졸업이었다.⁴⁶⁾

이렇게 이종혁은 유년학교를 1913년 12기로 졸업하였다.⁴⁷⁾ 다음해 일본 육사에 입학하고 1915년 제27기로 졸업하였다.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39) 대한매일신보에는 이들의 일본행을 알리며 다음과 같은 응원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여화 우리 무관학도들아, 군사학을 공부하여 적개심을 키우고 나라 독립 등에 지고 세계열강 무리치자 하였더니 갑작스런 군부 폐지로 학업 중단하였으나 와신상담 하여보세. 44명이 한마음에 뜨거운 피 뿌리며 공부하여 나라 중흥 공신이 되어 보세. 여화 우리 학도들아. 동해를 건너 후에 급류중에 노를 짓고 烈日아래 칼을 둘러 그 학업을 연구하고 이내 분발하여서 우리 국권 회복하고 유방 백제하여보세”(『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12일자).

40) 당시 생도들의 휴대품으로는 다갈색 모자 1개, 다갈색 여름 겹바지 2벌, 여름속바지 2벌, 겨울 겹바지 1벌, 겨울속바지 2벌, 반바지 속옷 1장, 다갈색화 1켢레, 이불커버 2개, 양말 3켢레, 피복 손질도구, 다갈색 외투 1벌, 수통 1개, 잡낭 1개 등이었다(『武官学校生徒日本留学の際携行すべき物件に関する件』, 보제2535호, 1909년 9월 2일).

41) 『밀대일기』, 「육군중앙유년학교부 보병대위소창우사람보고」, 1909년 9월 7일

42) 「본교에 입교한 한국학생신원조서별지일통급」, 진달제357호 1909년 9월 14일.

43) 「旧韓國武官学校生徒教育方」, 国立公文書館 太政官・内閣關係 第35編, 1911년 5월 17일

44) 김석원, 앞의 책, 66쪽. 이 때 큰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 하나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였으며, 다른 하나는 한일병합이었다.

45) 「旧韓國武官学校生徒教育方」, 제1782호, 1912년 5월 17일(국립공문서관).

46) 「旧韓國武官学校生徒教育の件」 『대일기』, 군사과제52호, 1911년 5월 2일.

47) 김석원, 위의 책 참조. 당시 12기는 267명이었다(『일본관보』 1913년 6월 4일).

금번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조선 사람으로 유년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육군소위로 임명된 청년이 작년에도 십여 명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이십 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생의 사진 설명(성적 차례대로) 장석륜, 김석원, 서정필, 백홍석, 김중규, 이방우, 김인옥, 장유근, 김종식, 이동훈, 정훈, 이종혁, 남태현, 유관희, 이희겸, 장기형, 장성환⁴⁸⁾

이종혁은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후쿠오카 제12사단 28연대 소속이었다.⁴⁹⁾ 그해 일시 귀국하였다.⁵⁰⁾ 그리고 인천의 갑부 沈能德의 딸과 결혼하였다.⁵¹⁾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결국 딸 하나를 두고 이혼하였다.⁵²⁾ 제1차 세계대전이 정리될 즈음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 제국 일본은 17만명의 군인을 시베리아로 파병하였다. 1918년 8월 2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고 같은 달 12일 일본 육군 제12사단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을 개시하였다. 9월 9일 일본육전대가 니콜리스크에 상륙하고 10월에는 동북시베리아 일대를 점령하여 작전지역을 확대하였다. 이 때 이종혁과 염창섭, 이응준 등이 러시아 연해주 전선에 참여하였다. 1918년 8월 이후 이종혁은 연해주지역에서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토벌’을 진행하였다. 제국 일본군의 연해주 침략은 한인부대 창설을 재촉하였다. 원호인들을 대표하여 최고령 등은 별도의 한인부대 창설과 참전을 요청하였다. 이들과 달리 신한촌의 입적군인 다수는 배일적 친볼셰비키 입장을 취했다.⁵³⁾

이종혁은 연해주 지역 한 마을에 주둔하고 있을 때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한인을 취조하게 되었다. 당시 소위였던 이종혁은 중대장의 처형 명령을 따랐으며, 이 때 한인은 이종혁에게 ‘조선인으로 일본군 소위로 복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였다.⁵⁴⁾ 이 사건을 겪고 출정에서 돌아온 이종혁은 바로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이종혁은 이 때 보병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하였다.⁵⁵⁾

그가 나고야에서 중위로 근무할 때 국내에서 거족적 독립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났다.

48) 『매일신보』 1915년 6월 19일

49) 「이종혁판결문」 참조.

50)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중위로 임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위 임관이 정확하다. 중위는 그가 만주로 탈출했을 때 마지막 계급이었다.

51) 덕수씨족 족보 참조. 심능덕은 경기도 광주인으로 1888년 인천에 와서 곡물 무역상 및 객주업을 경영하였다. 객주업과 곡물업의 매출액이 1916년 기준으로 4백만원 정도였다. 특히 객주업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천 상업회의소 평의원과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매일신보 1916년 4월 27일, 인천신사신상 소개호 심능덕군), 1926년 5월 3일 사망하였다(『매일신보』 1926년 5월 5일).

52) 선우휘는 이종혁과 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부인의 부정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이종혁이 부인과 이혼한 후 딸과도 이별하게 되었으며, 그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이후에도 그들과의 연락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선우휘, 「마덕창대인」, 131~132쪽).

53) 김병기, 반병률, 『국외 3.1운동』, 독립기념관, 2009, 238쪽.

54) 이종혁이 유봉영에게 전한 이야기를 선우휘가 소설형식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마덕창대인에는 “너는 어떻게 돼서 이런 복새판에 끼어들었느냐?”라고 이종혁이 묻자 항일투사는 당신은 어떻게 돼서 그런 왜놈군관의 복장을 하구 이런 데까지 와서 어정되고 있는거요”라고 했다. 이 일로 이종혁은 민족적 정체성과 자신의 영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 것 같다.

55) 『매일신보』 1919년 4월 20일자.

이종혁은 더 이상 일본군에 복무할 수 없었던 것 같다.⁵⁶⁾ 수차례 국내 파견을 군에 요청하였다.⁵⁷⁾ 이종혁이 만주로 망명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는 큰 궤짝 하나를 畏友 유봉영에게 맡기고 만주로 망명하였다.⁵⁸⁾

4. 만주 망명과 참의부 활동

3.1운동 이후 만주지역은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조직되었다. 3·1운동 이후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여 항일독립전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려는 민족적 염원에 따라 성립된 임시정부가 상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군사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방침을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도 대처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자체가 독립운동의 영도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⁵⁹⁾ 또한 임시정부는 외교독립론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기본노선으로 삼은 재만 무장단체들을 지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요컨대 임시정부는 그들이 택한 외교노선으로 인해 만주의 무장독립단체를 영도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좌절시켰다.

남만주지역 독립군 단체들은 이처럼 경신참변과 자유시참변 이래 일시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던 독립전쟁 전선의 재정비와 투쟁역량의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만주에 소재한 독립단체들은 아직 국지적인 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⁶⁰⁾ 이러한 가운데 독립단체들은 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단체간의 통합으로 요약된다. 이는 당시 독립단체들이 이전처럼 각 단체의 분산적인 독립운동으로는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만주로 망명한 이종혁은 봉천에 거처를 두었다. 당시 동북은 군벌들의 할거시대였으며, 특히 장작림의 위세가 컸다. 이종혁은 만주 망명 후 어떤 연유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바로 독립군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⁶¹⁾ 그는 봉직전쟁에서 직예직 군으로 있다

56) 『중외일보』 1929년 2월 11일, 「참의부이종혁 복심공판연기」.

57) 『매일신보』 1928년 12월 16일. 참의부군사수뇌자 이종혁 공판개정.

58) 그 궤짝에는 병서가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서를 반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설의 극적 재미를 위해 기술한 것 같다.(선우휘, 앞의 글, 134쪽). 이종혁이 참의부에서 활동한 시기가 1925년이기 때문에 3.1운동을 목도하고 1920년 경에 망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후 4년 동안 풍옥상 부대 등에서 활동한 곳으로 보인다.

59) 유준기, 「참의부」,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202~203쪽.

6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 164쪽.

61) 박경은 이종혁이 풍옥상 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한 인물로 조성환을 들고 있다(박경, 앞의 글 166쪽). 다만 일본 육사 선배였던 유동열 역시 만주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다.

가 봉천군 포로가 되었다. 사형장에 끌려가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그는 중국 장교 3명과 모의하여 탈출하는 데 성공, 베이징[北京]까지 도망갔다. 하지만 베이징 성내는 벌써 봉천군의 손에 들어가 그 경계망은 거미줄과 같이 퍼져 있었다. 제국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화중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가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인을 선구로 한 국민정부군의 便衣隊 3백여 명이 봉천군 주요 인물을 암살 혹은 건축물의 파괴를 목적으로 북경 성내에 잠입하고 있다’라고 허위로 선전하였다. 봉천군벌은 국민군에 가입하였던 중국인은 물론, 한인을 닥치는 대로 검거 체포하여 별다른 취조도 취하지 않고 사형을 단행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종혁은 1924년 말경 참의부로부터 여비 300원을 받고 만주로 돌아왔다.⁶²⁾ 이때 만주에서 활동했던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와 일본육사 선배로는 지청천이 있었고, 일본 육사 선배로 유동열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종혁이 합류한 독립운동 단체 참의부는 정의부와 함께 남만주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일제는 이종혁의 활동 가운데 참의부에서의 역할을 주목하였다. 참의부는 일제가 조사하였듯이 한반도와 만주지역 국경지대인 압록강변에서 일본군 수비대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힌 단체였다.⁶³⁾ 하지만 참의부는 1925년 2월 고마령 전투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면서 조직의 근간도 흔들렸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종혁(마덕창)의 등장은 참의부의 세력을 만회하는 데 결정적 요소였다.⁶⁴⁾ 1925년 하얼빈총영사관에는 이종혁을 통화현농무계에서 유동열과 함께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⁶⁵⁾ 유동열은 일본육사 15기 출신으로 이갑과 동기였으며, 경술국치 이후 만주를 비롯한 중국 지역에서 무장투쟁의 선봉으로 활동한 인물이다.⁶⁶⁾

이종혁이 활동했던 1920년대 중반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단은 3부로 요약된다. 그 가운데 참의부는 輯安, 寬甸, 臨江, 長白, 撫松縣을 아우르고 있었다. 1922년 8월 조직된 大韓統義府는 독립군이 염원하였던 표현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 통의부는 여러 단체를 통합하였다기보다는 미봉함으로써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벽주의자들이 통의부에서 이탈함으로써 통의부는 성립초기에 지녔던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통의부 의용군 제1, 2, 3중대와 유격대 및 독립소대를 분리시켜 1924년 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陸軍 駐滿參議府가 조직되었다.⁶⁷⁾

62) 이종혁 판결문 참조.

63)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9, 229쪽.

64) 위의 책, 230쪽.

6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41, 남북만주에서 불령선인 단체 조사의 건, 기밀제768호, 1925년 5월 21일.

6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34, 柳東悅 行動, 機密受제1176호-關機高收제15067호, 1922년 10월 28일.

67) 金承學, 『韓國獨立史』(獨立同志會, 1965), 참조. 채영국, 「1920년대 중반 남만지역독립군단의 정비와 활동」(『한국독립

참의부는 설립 당시 중앙부서에 중앙의회와 민사부를 설치하였지만 군단으로서 그 중심을 무장투쟁에 두었다.⁶⁸⁾ 무장투쟁을 선도하였던 白狂雲, 崔碩淳이 제1,2 참의장이 되었고, 1925년 3월 고마령 전투에서 희생된 후 참의부의 투쟁방략에도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1925년 8월 21회 행정회의 이후에는 종전의 체제를 탈피하여 행정조직과 관서를 정비하기 시작함으로써 무장우선투쟁에서 자치우선주의로 그 노선이 전환되었다. 특히 1927년 3월에 제3대 참의장 尹世葦이 사임한 후 金承學이 제4임 참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군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참의부는 산업의 진흥과 문화계몽 그리고 민족교육 방면에서도 자치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⁶⁹⁾

창립 초기 참의부는 간부진 밑에 약 500명 이상의 병력으로 남만의 압록강변 중국지역을 관할하면서 지역 내 한인들에게 자치행정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독립군단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참의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1925년경 집안현 화전자에 본부를 정하였다. 창립당시의 참의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참의장 겸 제1중대장 蔡燦(백광운)
제2중대장 崔碩淳, 제3중대장 崔志豊
제4중대장 金昌彬 제5중대장 金蒼大
독립소대장 許雲起 훈련대장 朴應伯
중앙의회의장 白時觀 민사부장 金篠厦⁷⁰⁾

참의부의 조직은 보다 안정적으로 대민활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으며 급기야는 유혈충돌로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즉 참의장 겸 제1중대장이었던 백광운이 1924년 겨울 통의부 유격대 白炳俊과 白世雨 등에게 참살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하였다.⁷¹⁾ 또한 일제의 습격을 받아 제2중대장 최석순이 사망하였다.⁷²⁾ 본래 참의부의 창립취지는 남만 지역 각 독립단체간에 알력의 악습을 막고 민족적 역량을 항일운동에 총

운동사연구』 8, 1994). 참의부의 성립 원인은 다음 성명서를 통해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났다. “1919년 3월 독립을 선언한 후 西路軍政署, 한족회, 靑年團聯合會, 義勇隊 등이 난립하여 각 간부간에 의견이 통일하지 않고 교민 호수 점령을 위하여 암투를 계속하였으나 1920년부터는 두번에 걸쳐 통일되어 통의부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항상 내분을 일으켜 의군부의 병립을 보게되어 제1차 동족전이 일어나 대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 동족 전쟁을 불쌍하게 여기는 인사들은 통의부와와의 관계를 끊고 제1, 2, 3, 5중대에서 대표를 임시정부에 파견하여 정부의 직할이 되고 명칭을 참의부라고 하는 군단을 설립하였다”(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130~131쪽).

68) 유병호, 「1920년대 중기 남만주에서의 ‘自治’와 ‘共和政體’」(『역사비평』 17, 1992), 252쪽.

69) 유준기, 앞의 글, 146~147쪽.

70) 김승학, 『한국독립사』 350쪽.

71) 김승학, 위와 같음..

72) 채근식, 앞의 책, 134쪽.

집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통의부와 의군부에 대해서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통의부에서는 이를 주도권 쟁탈전으로 몰고가 결국 백광운이 참살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⁷³⁾

한편 참의부는 또 한번 중대한 조직 전환의 위기를 맞게 된다. 참의부는 1925년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 위해 輯安縣 古馬嶺에서 군사회의를 개최하고 있던중 이를 탐지한 초산 주둔 수비대에게 기습을 받고 장시간 교전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참의장 崔碩淳을 비롯한 간부와 대원 29명이 전사하였다.⁷⁴⁾ 참의부는 조직의 붕괴를 막고 보다 발전적인 전환을 꾀하였다. 1925년 8월 행정위원회를 열고 행정조직과 관서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군사와 민정을 통할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때 이종혁은 군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립운동 통합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25년 9월 5일 이종혁은 자신의 일본 육사 선배이자 정의부 군사위원장이었던 이청천이 수하 성인호와 최관룡을 대동하고 하얼빈에 왔을 때 신민부 교섭 중개원으로 3부 통합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⁷⁵⁾ 뿐만 아니라 이청천이 신민부의 책임자였던 김혁과 정신 등을 만나 다음과 같은 교섭을 통하여 3부의 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일조하였다. 다음은 이종혁과 이청천 등이 교섭한 주요 내용이다.

첫째 군사통일, 둘째 재정통일, 셋째 임시정부 봉대, 넷째 정의부 및 신민부 세력 구역내에 서는 쌍방으로 모연하지 않을 것. 다섯째 양 구역외에서는 임의로 모연을 방해하지 않을 것, 여섯째 재만 각기에서 소단체는 진압타파할 것.⁷⁶⁾

참의부는 통합문제뿐만 아니라 민정부문도 강조하였다. 이는 독립군 양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나아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원활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되었다. 이처럼 각 근거지는 모두 압록강변을 끼고 있었으며 신속한 통신망을 유지하면서 일제의 동태에 주시하였다.⁷⁷⁾ 중앙조직 및 군사조직을 구성하면서 아울러 민사조직 역시 관할 구역을 정하고 지방 행정망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참의부는

73) 大韓統義府는 남만주의 각 독립군을 총망라한 강력한 항일민족운동단체로 등장하여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이념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즉 공화적 민족주의 계열과 복벽주의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제5중대장 김명봉과 부대장 조태현은 통의부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피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덕원을 비롯하여 채상덕, 김평식, 박대오 등은 환인현에 새로이 항일군단을 조직하여 통의부에서 분립을 선언 의군부를 편성하였다(유준기, 「1920년대 재만 독립운동단체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8, 142쪽). 이렇게 백광운의 죽음은 그 이전부터 그 원인을 배태하고 있었다.

74) 김승학, 앞의 책, 351~352쪽.

7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41, 「선비단 정의부대 신민부 타협진행 상황에 관한 건」(기밀 제508호, 1925년 10월 5일).

7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41, 「선비단 정의부대 신민부 타협진행 상황에 관한 건」(기밀 제508호, 1925년 10월 5일).

77) 채영국, 「1920년대 중반 남만지역독립군단의 정비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 8, 1994, 258쪽.

관할 구역내의 한인을 천호 단위로 하여 백가장을 두고 그 밑에 십가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한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는 행정구를 설정하여 50명 전후의 경호대원을 육성하고 지방 치안을 유지하고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다. 특히 각 근거지가 한반도와 밀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진입 유격대와 함께 무장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보협대라는 특수조직이었다. 이 보협대의 임무는 각 중대 및 소속부대간의 통신은 물론이고 참의부 독립군들이 유격대를 편성하여 진입할 경우 안내의 역할 맡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참의부의 대일항전은 주로 국내진격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다.⁷⁸⁾ 특히 1923년부터 25년까지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다. 1923년 8월 참의부가 성립된 직후 활동, 1924년 8월 齋藤實 총독 암살기도⁷⁹⁾와 같은 일본 관리에 대한 암살시도는 참의부가 독립운동상에 처해 있는 위치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특히 이수홍의 군자금 모집과 그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한편 1927년 3월 하얼빈에서 소집되는 제3공산당 연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의장을 사임한 윤세용 대신에 임시정부에서는 김승학을 참의장으로 임명하여 참의부에 보냈다.⁸⁰⁾ 김승학은 참의장에 취임한 후 중앙조직의 직제를 위원장제로 바꾸고 관할 지역내의 지방조직도 정비하였다.⁸¹⁾ 동시에 중국 관내의 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장교들을 군사조직에 배치하여 군사력도 회복해 갔다. 김승학이 참의장이 되고난 후 새롭게 편성된 중앙조직 간부는 다음과 같다. 이 때 이종혁은 군사위원장을 맡았다.

참의장 김승학 군사위원장 마덕창(이종혁) 민사위원장 김소하 재무위원장 한의제(박희빈)
법무위원장 계추강(계담) 교육위원장 양기하 중앙의회 의장 백시관⁸²⁾

78) 유준기, 「참의부」,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220쪽~223쪽. 참의부가 국민부에 통합되는 1929년까지 약 7년 동안 5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국내진격에 주력하였다. 또한 일제의 군경과 밀정, 친일파 등을 살해하였으며 이주한인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1923년 8월 참의부가 성립된 직후 제3중대장 최지풍은 소속 대원들에게 국내진입을 명하였다. 이에 소대장 김용택은 소대원을 인솔하여 희천군 북면의 문창경찰관주재소를 점령하고 면사무소를 소각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긍지와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한다.

79) 조선총독 사이토가 한반도 북쪽 방면을 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참의부에서는 제2중대 장창현 지휘하에 제1소대장 참위 한형웅과 오장, 이춘화 등 10여 명을 파견하였고 이들은 위원군 강변에서 대기하다가 사이토 일행이 승선한 배를 향하여 사격하였다. 이 때 사이토 일행은 재빨리 피해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이 사건 자체는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큰 타격을 주었다(김승학, 앞의 책, 151쪽). 왜냐하면 사이토는 대외적으로 조선통치의 안정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지방 순시를 한 것인데 독립군에게 저격당하였기 때문에 무단통치기와 차이를 두었다고 선전하였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건으로 참의부 요원 2명이 피체되어 1명이 순국하기도 하였다.

80)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2009, 12쪽.

81) 군정부로의 모습을 탈바꿈한 참의부는 1928년 조직을 마지막으로 재정비한다. 본부를 환인현으로 하고 있는 참의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참의장 김승학, 군사위원 마덕창, 외교위원 김소하, 조직위원 김강, 선전위원 박대호, 재무위원, 김진, 민사위원 이광명, 교통위원 최천주, 법무위원 맹성록, 비서장 김선평, 중앙의회 의장 양하산, 상의회원 계추강, 상의회원 김윤석, 상의회원 백시관, 상의회원 박종수, 상의회원 백학세 제1중대장 김광명 인원 50, 제2중대장 김현 인원 50, 제3중대장 한세진 인원 30, 제4중대장 김상옥 인원 20, 제5중대장 박대호 인원 30, 중앙호위대장 천천리 인원 20(김승학, 『한국독립사』, 351쪽).

참의부의 군사조직은 초기에는 집안현, 환인현, 통화현 등 각 지역에 중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종혁이 군사위원장을 맡은 후에는 중앙조직 내의 군사위원장 밑에 중대와 소속부대를 편성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위원장 이종혁 밑에 5개 중대와 중앙호위대가 편성되었는데 제1중대장은 김소하, 제2중대장은 박희곤, 제3중대장은 양봉제, 제4중대장은 박대호, 중앙호위대장 차천리가 임명되었다.⁸³⁾ 이종혁은 참의부 소속 군인의 교육과 군행정을 책임졌으며, 국내 진입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종혁은 환인과 통화현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각 지역에 ‘세포’를 관리하면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⁸⁴⁾

5. 체포와 순국

이종혁은 1928년 9월 봉천에서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었다.⁸⁵⁾ 이 시기는 참의부에서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사관학교를 운영할 때이다. 그가 참의부 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왜 봉천까지 왔는지 명확하지 않다. 자신의 부하였던 최영암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봉천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언도 받고 공소하여 평양 복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된 이종혁에게 1929년 5월 21일 5년 판결이 확정되었다.⁸⁶⁾ 그가 체포되자 일본 육사출신의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의부원 이종혁은 일찍이 동경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24연대에 재직하여 정 7위훈6등의 육군 중위로 있다가 시국에 불만을 품고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민으로 입적한 후 특히 풍옥상의 참모장이 되어 많이 활동하다가 참의부에 참가하여 군사위원장이 되어서 00단을 통일하며 밀정 등을 살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⁸⁷⁾

이종혁의 활동과 체포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졌는데 기사의 오류가 곳곳에 보였다.

82) 『독립운동사』 5 참조.

83) 김병기, 『참의부연구』, 80쪽.

84) 『매일신보』 1928년 11월 27일, 「참의원에 가입했던 예비중위이종혁」.

85) 판결문, 매일신보 참조. 선우휘, 마덕창대인, 135쪽에서는 1927년 가을이라고 했는데 유봉영의 기억의 오류로 여겨진다. 작년9월 27일 동지 수명과 같이 중국 봉천서탑대가에서 일본영사관 경찰손에 체포되어 취조를 마친 후 동년 12월 11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판결을 불복하고 평양 복심법원에 공소중이든 충남 당진군 출생 일본육군 중위 이종혁의 관한 천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의 복심판결을 21일 오후 경재판장으로부터 징역 5년 언도받음(『중외일보』, 1929년 5월 23일, 「육군중위로 탈주 만주서 직접 운동」).

86) 『매일신보』 1929년 5월 25일, 「참의부원 이종혁 재심에서 5년언도」.

87) 위와 같음.

그의 출신지를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거나⁸⁸⁾, 특히 “1924년 만주로 가서 그후 1926년 중국 국민군제 0군 참모로 있다가 1926년 12월경 봉천군에게 포로가 되어 사참에 이르렀다가 교묘히 봉천을 탈출하여 북경에 있었다. 1928년 2월 경 참의부에 가입하여 드디어 군사부 집행위원장까지 달하였다.”⁸⁹⁾라는 기사에서는 그의 만주망명 시기와 참의부 가입 시기 등에서 오류가 있다. 예컨대 만주 망명은 1920년 직후이며, 참의부에서 군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1927년 3월이다.⁹⁰⁾ 또한 체포 관련 날짜도 “작년(1928) 9월 27일 동지 수명과 같이 중국 봉천서탐대가에서 일본영사관 경찰손에 체포되어”⁹¹⁾라는 기사와 “이종혁은 일본육사를 거쳐 중위로 근무하다 중국 국민군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군사위원장으로 활약 중 1928년 12월 20일 체포되었다.”⁹²⁾ 라는 기사는 무려 3개월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28년 9월 18일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에는 참의부 군사위원장 마덕창이 봉천에서 일경에 피체되었다”⁹³⁾라고 한 정보와 “1928년 9월 17일 봉천서탐대가에서 일본영사관 경찰의 손에 체포되어”⁹⁴⁾라는 기사는 이종혁의 체포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난다. 그의 정확한 체포일자는 1928년 9월 17일이다.⁹⁵⁾

그는 체포된 후 신의주 경찰서에서 심리를 마치고 1928년 12월 21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언도받았다. 하지만 이종혁은 이에 불복하여 평양복심법원 상고하였다. 공판이 계속 연기되었으며,⁹⁶⁾ 마침내 평양 복심 법원에서 1929년 5월 21일 5년형을 받았고, 그해 10월 24일 상고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다. 상고 기각 관련 언론보도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뒤를 이어 소창12사단 소속 현역 소위로 있다가 대정칠년 서백리아 출전까지 하여 정7위훈6등 중위까지 승급하여 현재로도 예비사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충남 당진군 이종혁(38)에 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강도 피고사건의 상고심은 이십사일 고등법원에서 이등 검사 간여하에 소천 재판장으로부터 상고 기각의 판결을 내리어 원심대로 5년 징역에 처하였다. 그는 서백리아 출전을 하였다가 귀국한 후 1921년에 일본군대에서 나와 최초는 중국으로 건너가 장개석의 군대에 들어가 국민혁명을 도우다가 조선00군 참의부에 참가하여 군사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어 신의주 지방법원과 평양복심에서 5년 징역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던 것인데 그간 그는 파탄만은 생애를 보내

88) 『조선중외일보』 1929년 7월 14일, 「참의부 군사위원장 이종혁예심종결」.

89) 『매일신보』 1928년 11월 27일, 「참의원에 가입했던 예비중위이종혁」.

90) 『한국독립운동사』 5권 참조.

91) 『중외일보』 1929년 2월 11일, 참의부 이종혁 복심 공판연기, 입회 변호사 사정으로, 사건내용의 개요

92) 『동아일보』 1929년 5월 23일

93)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9, 230쪽.

94) 『중외일보』 1929년 2월 11일, 「참의부 이종혁 재심공판연기」.

95) 「이종혁판결문」 참조.

96) 『중외일보』 1929년 2월 11일, 「참의부 이종혁 재심공판연기」.

있더라.⁹⁷⁾

평양감옥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루고 있었던 이종혁은 1929년 6월 26일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이었던 유봉영에게 자신은 감옥에서 잘 있으니 이전에 부탁한 漢和사전을 부치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서 올 수 있으니 그만 두라는 엽서를 보냈다.⁹⁸⁾ 그 다음해 5월 28일에 또 한차례 유봉영에게 엽서를 보냈다. 보내준 사전과 상용 일러 회화책도 잘 받았다고 하면서 유봉영의 관심에 크게 감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이종혁은 좋지 않은 몸 상태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변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5년 만기 수형생활을 끝내고 1934년 4월 1일 평양형무소에서 출옥되어 평양 시내 금송여관에 체류하였다. 그는 복역중 늑막염을 심하게 앓아 건강이 크게 좋지 않았다.⁹⁹⁾ 유봉영은 평양 금송여관에 임시 거주하고 있던 이종혁을 데리고 자신의 서울 소격동 자택으로 왔다. 이때 대한제국 무관학교와 일본 육사부터 단짝이었던 김석원이 찾아 왔다. 그는 그의 회고록 노병의 한에 이렇게 기록했다.

유봉영을 설득하고 결국엔 그를 따라가 참 오래간만에 이종혁을 만났다. 생각하면 한국무관학교 시절부터 일본 육사까지 만 8년 동안이나 한술밥을 먹으며 책상을 나란히 하고 공부를 같이 한 이종혁과 나 사이가 아니던가. 하지만 한쪽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군 장교요, 또 한쪽은 독립을 가로막는 일본군의 장교였다. 묘한 사이였다. 따져보면 극과 극의 사이랄까. 하여튼 나는 이종혁과의 오랜 해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착잡한 감회를 맛보았다. 우선 이종혁을 볼 면목이 없었다. 심한 늑막염으로 병색이 말이 아닌 이종혁이었지만 도리어 그가 당당한 인간처럼 보였고 나 자신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보였다.¹⁰⁰⁾

그의 병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자 관산 조철호는 이종혁을 평북 선천 요양원으로 이전하여 요양하게 하였는데 1935년 12월 14일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하지만 그의 유해는 바로 고향 충남 당진으로 이장하지 못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유해를 이장할 형편이 못되었다. 다만 그의 큰형 이종철이 충남 당진으로 이종혁의 유해 이장을 준비하였다. 이 때 그의 군대 동기들이 함께 참여하였다.¹⁰¹⁾

97) 『매일신보』 1929년 10월 25일, 「이종혁의 상고기각」.

98) 신연수 시인 소장의 엽서를 이원규 작가가 필자에게 보내주었으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다.

99) 『동아일보』 1934년 4월 7일

100) 김석원, 앞의 책 참조.

101)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11일, 「이종혁 유해 이장을 준비」.

6. 맺음말

이종혁의 생애는 한국근대사의 민낯이자 한국군의 정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의 일생은 대한제국 마지막 무관생도의 운명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1909년 9월 폐교된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 제국 일본의 군사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며,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병합되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교육은 지속되었다. 이종혁을 비롯하여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정체성이 열어져 갔으며, 그야말로 일본에 순치되어 안락한 생을 영위하는데 길들여졌다.

이종혁도 일본 육사 졸업 이후 자대배치와 1918년 시베리아 출병에 참가하면서 제국 일본군으로의 위상을 몸으로 직접 느꼈다.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일본에서 전해들은 이종혁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선배 김정천과 지청천을 떠올렸을 것이다. 시베리아 출병 당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문했던 한인 독립운동가, 조국에서 전개되었었던 3.1운동의 도도한 물결은 이종혁에게는 묵직한 난제였다. 만주로 망명을 결심한 이종혁은 畏友 유봉영에게 이 사실을 밝혔다.

만주로 망명한 후 이종혁은 국민정부 북벌군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1924년 참의부와 연결된 이종혁은 일본육사 선배인 지청천과 유동열을 통해 독립군 조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군대조련과 군자금 모집에도 참여하였으며, 1927년 김승학 참의장 시기에 참의부 군사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종혁은 1928년 9월 봉천(심양)에서 일본영사관 경찰에게 피체되었다. 그는 1929년 5년형을 확정받고 1931년 4월 만기 출옥하였다. 수형 생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 시험을 받았으며, 이를 이겨냈지만 자신의 신체는 회복 불능상태였다. 이종혁은 1935년 12월에 평안북도 선천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과 책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것을(정체)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제국 일본의 순치를 거부한 이종혁의 삶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고민해야 할 큰 과제이다. 아울러 그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일본 육사출신들 가운데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인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군사를 재정립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여겨진다.

【토론문】

김주용, <제국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이종혁의 생애와 활동>(토론문)

서 민 교 (동국대)

이 발표문은 독립운동가 이종혁(1892~1935)의 생애와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 논문으로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 연구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우리 연구자들을 질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김주용 선생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시사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싶다.

우선 독립운동가 이종혁에 대한 연구가 지극히 소략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발표자가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독립운동가 이종혁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박경(2018)의 연구와 이번 발표를 제외하고는 한국학계뿐만 아니라 일본 학계에서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¹⁾ 그런 점에서도 이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연구논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두 번째는 이종혁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제국무관학교 마지막 기수(한국병합 당시 대한제국무관학교 1년생)의 생도로서 한국병합 후, 즉 망국 후에 일본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여 일본육사를 졸업하고(일본육사 27기) 평생의 안주가 보장된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직업장교로서 중위까지 지내다가, 이를 박차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침략국가인 제국 일본군 장교에서 독립운동가로 혁명적인 전향을 단행했던 이종혁의 행동은 일본육사 출신 조선인들 중에서도 김경천(23기), 지청천(26기)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서만 보이고 있는 현상이었다. 대부분의 조선인 장교들은 일제의 통치하에 안주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군인으로 일생을 보내었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²⁾

1) 물론 이종혁에 대한 언급은 기존의 독립운동사 연구, 특히 참의부에 대한 연구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2) 일본 육사 출신은 아니지만 일본의 식민지 만주국의 군관학교 출신으로 일제에 충성을 다했던 조선인 만군장교

이러한 이종혁과 같은 인물의 일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천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으며, 또 그 시대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에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발표자를 포함한 한국의 근대사 연구자들에게도 본 발표를 핑계 삼아 경종을 울리고 싶다.

세 번째는, 먼저 토론자 스스로를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사연구자, 일본군사사 연구자들에게 반성과 질책을 보내고 싶다.³⁾ 구한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군인출신의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좌익과 우익,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념적 대립을 핑계 삼아, 또 현실의 권력이라는 그림자 아래서, 너무나도 주정적(主情的)이며, 단편적이고 과대 포장되어, 아니 극도로 왜곡되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정말 현재의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도 독립운동가 이종혁과 같은 인물의 행적을 밝혀내어 세상에 알려야 하는 작업이 갖는 역사적, 민족적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고 싶다.

이어서 위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 싶다.

먼저, 이종혁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논문이므로 그의 생애에 대한 부분에서 변곡점에 대한 부분, 즉 동기(動機)와 경위(經緯), 원인과 결과 등등에 대한 납득이 가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가 덕수 이씨 집안으로 충무공의 후손이라는 점이 무관의 길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에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일본육사로 가는 길에는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망국의 원흉인 제국 일본의 육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천착이 좀 더 깊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자료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지만).

그리고 이종혁의 일본중앙유년학교와 일본 육사에서의 경험, 그리고 일본군 초급 장교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본의 군사사 연구의 업적에 근거하면서 좀 더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여기에는 물론 당시의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대적 분위기라든지, 일본의 군사학교 교과과정이나, 일본에서의 생활 경험 등이 미쳤을 영향력 등등).

특히 1919년 3.1운동이나 ‘시베리아 출병’ 당시의 경험은 그의 일생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라기 본다는 축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근대사 연구에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지만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이라는 것은 당시대의 시대성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경향성을 바꾸게 되는 커다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마치 작금의 코로나사태와도 같이.) 그럼 점을 충분히 참조하면서 한국의 3.1운동, 1920년대 무장독립

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일본 육사출신을 능가했으면 능가했지 결코 뒤지지 않는 친일행각으로 일관하였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이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토론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독백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운동 등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각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종혁이 중국으로 망명을 단행하면서 왜 만주의 독립군근거지로 직행하지 않고 그리 규모가 크지도 않았던 직예군 계열의 군벌인 풍옥상의 군으로 먼저 갔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지점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토론자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연구를 심화시킬 때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도 논문의 말미에서 밝히고 있지만, 발표자의 주전공분야인 만주지역에서 있어서 일본군 장교출신 조선인들의 행태에 대해 독립운동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윤상필이나 홍사익에 대해서도 연구를 심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일생이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변절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 순간에 대오각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의 백선엽 장군 문제에 대한 평가도, 필자도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 한 인간의 일생의 공과(功過)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과 과에 대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엄밀하고 공평하면서도 냉정하게 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점에서 바라볼 때 독립운동가 이종혁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역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오늘 김주용 선생의 발표는 그 내용도 잘 정리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역사학자들이 인물군상들의 역사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입니다.

【제4발표문】

국가총동원법 실행 이후 휘발유 배급통제 실태분석
- 「국가총동원관계철」을 중심으로 -

최 중 길 (원광대)

1. 국가기록원 소장 「國家總動員관계철」 개요

「국가총동원관계철」 기록물 내용

생산년도; 1939년

생산부서;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관리번호; CJA0004243

문서번호; 86-223

M/F번호; 86-851

총 쪽수; 1,155면

연번	기록물건명	분량	비고
1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17	
2	관청용 휘발유 할당증명요구서 제출시기에 관한 건	3	
3	관청수요에 근거한 물자입수 상황조사의 건	36	
4	소화15년도 예산관계 물자수요 예정액 조사에 관한 건	15	
5	휘발유 할당 증명 요구서	20	
6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5	
7	소화14년도10월에서 12월기분 보통 강강재에 관한 건	33	
8	내지제 기계 발주승인서 하부 신청서에 관한 건	3	
9	영국정부의 전시 금지제품 주지에 관한 건	3	
10	노무수요조서에 관한 건	14	
11	고무제품의 배급 통제에 관한 건	8	
12	석유 배급 통제 강화에 관한 건	7	
13	소화15년도 물자수요조서에 관한 건	17	
14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설정에 관한 건	1	
15	소화15년도 물자수요 조사에 관한 건	3	
16	소화15년도 관청용 석유 수요량 조사의 건	68	
17	특수강의 배급 통제에 관한 건	1	
18	동의 배급 통제 요강	14	
19	동의 배급에 관한 건	1	
20	휘발유 및 중유구입량 및 소비량에 관한 건	2	

21	관청수요에 근거한 물자입수 상황조사에 관한 건	2	
22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에 관한 건	4	
23	동의 배급 통제 요강	14	18과 동일
24	동의 배급에 관한 건	1	
25	관청수리에 근거한 물자입수 상황조사에 관한 건	61	
26	휘발유 할당 증명 요구서	6	
27	관청 급여 모직물 조사에 관한 건	74	
28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11	
29	호스용 면사 기타 배급에 관한 건	10	
30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생산력 확충 계획 조사의 건	3	
31	소화14년도 관청수요 물자 할당에 관한 건	16	
32	특수강 표준 규격별 상품명 일람표 송부의 건	9	
33	철강 배급 통제 상의 취급 방침에 관한 건	6	
34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2	
35	관청용 휘발유 소비 절약에 관한 협의회(打合い会)개최의 건	7	
36	석탄 사용량 통보의 건	1	
37	특수강의배급 통제에 관한 건	1	
38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 단가표 송부의 건	7	
39	소화15년도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건	27	
40	소화15년도 물자수요 조사에 관한 건	1	
41	소화15년도 물자 수요 조사에 관한 건	1	
42	노무 수요 조사요강	6	
43	소화15년도 예산개정 경비조	1	
44	물자 수요 조사에 관한 건	1	
45	소화15년도 예산개산에 첨부한 물자조서의 건	2	
46	소화15년도 관청수요 중요물자 예정액에 관한 건	22	
47	서류 제출방법에 관한 건	2	
48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수요 물자에 관한 건	9	
49	소화14년도 관청수요 물자 할당에 관한 건	200	
50	물자 수요 조사에 관한 건	162	
51	소화14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 물자 수요액 표	1	
52	소화14년도 보호관찰소 가정사건 조정사무취급비 등 예산 물자 수요 수량조	1	
53	내지 제조 주강품의 수급통제에 관한 건	35	
54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39	
55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물자수요에 관한 건	52	
56	소화14년도 세출예산 집행계획 조서 제작에 대하여	2	
57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수요 물자에 관한 건	7	
58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에 따른 해외불 예정액 조정에 관한 건	4	
59	선재 내지 제품 대량 수요 배급에 관한 건	10	
60	소화14년도 관청수요 물자에 관한 건	4	
61	시험연구령에 관한 건	4	
62	사업설비령에 관한 건	2	
63	사변관계 산업경제 기타 국가총동원에 관한 중요제법령	5	
64	국산품 충용품목 제조자 명부 송부의 건	1	
65	총동원물자 사용수용령에 관한 건	5	
66	물자통제의 대강에 관한 건	19	
67	정무총감 앞 전보 사본	1	
68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관청물자 수요액 삭감에 관한 건	1	
69	물자 수요계 등에 관한 건	9	

70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	4	
71	색인	7	
72	표지	2	

법무국 전체의 물자동원계획과 관련한 기록

<소화 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昭和14年度物資動員計劃官廳需要ニ關スル件)>은 자원과장(資源課長)이 각 국장(局長) 및 전매국장(專賣局長), 회계과장(會計課長)에 보낸 것으로, 1939년도 관청수요에 대해 50% 삭감한 ‘물자수요조서(物資需要調書)’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다. 즉, 대장성(大藏省) 제출물자조서 22품목 중 석탄, 종이, 목재를 제외한 19개 품목을 5할 삭감하도록 하였다. <물자통제의 대강에 관한 건(物資統制ノ大綱ニ關スル件)>은 정무총감이 척무차관으로 받은 문건을 법무국장 등 각 국장에 보내 건이다. 첨부된 「물자통제의 대강(안)(物資統制ノ大綱(案))」에는 물가정책의 목표, 수급(需給)의 조정(調整), 가격의 공정(公定), 임은(賃銀) 기타 가임(家賃)·지대(地代) 등, 운송 및 운임(運賃), 물가통제의 목표, 내지(内地)·외지(外地)·만주 및 지나(支那) 상호간 통제의 연락조정, 기타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소화 15년도 관청수요 중요물자 예정액에 관한 건(昭和15年度官廳需要重要物資豫定額ニ關スル件)>은 1940년도 법무국이 사용할 중요물자의 사용예정액을 재무국(財務局)에 제출한 것이다. 재판소 및 공탁국(裁判所及供託局), 가정사건 조정사무취급비(家庭事件調停事務取扱費), 사상범죄 방알 특별시설비(思想犯罪防遏特別施設費) 등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기타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관청물자 수요액 삭감에 관한 건>, <소화14년도 관청수요물자 할당에 관한 건>, <소화 15년도 물자수요조사에 관한 건>, <소화 14년도 물자동원계획 단가표 송부의 건>,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생산력확충계획 조사의 건>,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설정에 관한 건> 등이 있다.

2. 국가총동원법 관련 세부 규정

일본 회계연도의 시작은 4월 1일이다. 따라서 정부관청의 각종 업무에 필요한 세부지침 혹은 각종의 기준은 대체로 회계연도의 시작시점 혹은 그 이전에 전달된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1939년의 회계연도 시작시점인 4월에 전년도에 제정·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관련된 업무지침이 전달되었다. 「국가총동원관계철」에 남아있는 1939년도 국가총동원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빠른 총동원 관련 규정은 1939년 3월 26일자로 작성된 「물가통제의 대강(안)」이다. 이 규정은 당시 일본 척무성(拓務省) 차관 다나카 타케오(田中

武雄)가 1939년 4월 19일자로 조선총독부 정부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에게 발송한 「물가통제의 대강(안)에 관한 건」의 첨부 자료이다. 이 자료를 수령한 조선총독부 오노 정부총감은 1939년 5월 1일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에게 「물가통제 대강에 관한 건」이란 문서를 통해 조선에서 전시물가대책의 강화를 꾀하기 위하여 첨부한 물가통제 대강에 따라 진행하라고 전하였다. 3월 26일자 「물가통제의 대강(안)」은 일부의 내용이 수정되어 4월 24일자 「물자통제의 대강」으로 확정되었다. 「물가통제의 대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제1. 물가통제의 목표
- 제2. 수급 조정
- 제3. 가격의 공정
- 제4. 임금 그 외
- 제5. 운송 및 운임
- 제6. 물가통제의 목표
- 제7. 전시 물가통제기구
- 제8. 내지, 외지, 만주 및 중국 서로간의 통제 연락 조정
- 제9. 그 외¹⁾

「물가통제의 대강(안)」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가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 공급의 원활한 조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배급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결국 이러한 수요공급의 조정은 가격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들 통제 물자에 대한 적절한 가격 결정 기준을 다음의 5가지로 정하고 있다.

- (1) 전시 적정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주의에 의거할 것, 원가계산방식 및 그 운용, 기준을 정하고 그 방침에 기초하여 각 물자마다 원료, 임금, 운반비, 이윤 등 가격구성의 각 요소마다 전시하의 합리적 원가계산을 행하고 당해 상품의 가격을 공정(公定)함.
- (2) 기계적인 원가계산주의에 의한 결과는 자칫하면 물가를 높게 유지할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더욱이 물가 상호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시물가수준의 유지에 노력할 것.
- (5) 평균가격제의 적용을 고려할 것.²⁾

1) 정부총감, 「물가통제의 대강에 관한 건」(1939년 5월 1일). 66번 자료

2) 정부총감, 「물가통제의 대강에 관한 건」(1939년 5월 1일). 66번 자료

위의 가격결정 기준에 의하면, 통제의 대상은 가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원자재의 가격, 임금, 운반비, 각 사업자의 이윤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전시하의 합리적 원가계산’을 거치는 즉 모든 요소에 대한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각 물자들이 서로에게 원자재이자로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각 물자 상호간의 관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통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가격 통제 방식의 기본적인 지침은 각 물자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물가통제의 대강(안)」은 먼저 전시의 물가정책은 “전시경제 운영의 기축”으로 “일정하게 물가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시경제는 “전체적으로 붕괴한다”³⁾고 위기의식을 전면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응급처치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물가는 “제정경제의 모든 부분과 밀접한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경제의 전부분 즉 물자의 생산, 배급, 소비 및 노력, 운송의 적합 그리고 조정등에 이르는 종합적 대책을 확립하고 실시해야만 한다”⁴⁾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거하여 기획원 자원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1939년도 각 관청의 물자수요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발송한다. 국가총동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부서는 기획원이다. 이 기획원의 자원국 자원과장이 1939년 4월 6일에 본부(本府) 각 국장, 전매국장, 회계과장에게 보낸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을 발송하였다. 이 자료에는 1938년 4월 1일에 제정·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1939년도 각 관청의 물자수요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쇼와14년도(1939년-필자) 물자동원계획은 이번에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 바 그 결론에 의하면, 관청수요는 45% 절약을 요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각 성 모두 이미 대상성에 제출한 물자수요조서를 아래의 방법에 의거하여 50% 삭감하고 이번 주 중에 기획원에 제출하여 관청수요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도 급히 삭감안(삭감이 불가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당초에 제출한 원안에 삭감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의 정세를 고려하여 별도의 최종안을 예정할 것)을 제출하여 절충을 필요로 하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관계자를 9일까지 올려 보내고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삭감안을 7일 중으로 당 부서로 회신할 것.⁵⁾

즉, 이 문서에 의하면 1939년 관청물자 수요에 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비

3) 정무총감, 「물가통제의 대강에 관한 건」(1939년 5월 1일). 66번 자료

4) 정무총감, 「물가통제의 대강에 관한 건」(1939년 5월 1일). 66번 자료

5) 법무국장, 「전보안」(1939년 4월 8일)의 첨부문서「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1939년 4월 6일) 번호 70.

하여 45% 삭감하라고 되어 있으나 각 관청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1-5까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50%를 삭감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통지를 받은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은 4월 8일자로 도쿄에 있는 총독부 사무소의 자원과장에게 1939년도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형무소, 보호관찰소의 물자수요는 전달받은 원안대로 잘 알겠다는 전보안을 작성한다.

이후 자원과장은 1939년 5월 2일 기획원이 입안하고 내각의 의결을 마친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을 전달하는 문서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에 관한 건」을 심의실전석사무관, 관방부 과장, 본부 각 국장, 체신, 철도, 전매 각 국장에게 발송하였다. 이 발송문서에 첨부된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제3조 주무대신은 총동원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려고 할 때는 당해 물자의 소유자에게 사용령서(令書) 또는 수용령서를 송달해야만 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물자의 관리자에게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전항 단서(但書)의 경우 관리자는 지체 없이 당해 물자의 소유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한다.

제4조 전조(前條)의 경우에는 주무대신이 당해물자에 대해 알려진 권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더욱이 군 기밀 보호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이외는 명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만 한다.

사용 또는 수용하려는 총동원물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전항의 공고가 있는 날에서 1개월 이내에 명령으로 정한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제6조 총동원물자의 소유자는 사용령서 또는 수용령서의 송달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당해 물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한다.

제15조 국가총동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해야만 하는 손실은 사용 또는 수용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사용 폐지 또는 수용이 있는 이후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청구해야만 한다. 단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에 있어서는 주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별도의 시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 또는 수용한 물자로 선취 특권, 질권 또는 재단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정부는 당해 물자에 대해 교부해야할 보상금을 공탁해야만 한다.

선취 특권자, 물권자 또는 재단저당권자는 전항의 공탁금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다.⁶⁾

위의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제3조에는 근대 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의 형태로 정하고 있어 전쟁수행이라는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합법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나아가 제15조에서 강제수용 대상이 된 물자에 대한 손실배상 규정을 명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배·보상의 기준이 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정도로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내각의 토의와 결정을 거쳐 상위법에 근거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고 명확하게 수용령 시행의 주무대신이 누구인지 적시한 것은 전쟁수행 과정에서 행한 다양한 형태의 인적 물적 총동원에 대한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이때의 책임에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양자가 존재한다. 일본정부는 예전부터 일관해서 자신들의 행위는 당시의 실정법에 기초하여 행한 국가의 행정행위이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에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것은 위의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일본정부의 정치적 책임은 명확하다.

1939년도에 각 부서에 전달된 「물가통제의 대강(안)」,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등의 기준은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 실시되면서 국가총동원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위 규정들이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1939년도 예산도 편성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작성된 예산편성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1939년 7월 10일자로 조선총독부 각 국장, 각 회계과장, 전매국장, 철도국장, 체신국장에게 보낸 「쇼와15년도 예산편성 등에 관한 건」이다. 이 자료는 차년도(1940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의결정사항을 통달 받은 정무총감이 총독부내의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는 각의에서 결정된 차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5가지 자료 구체적으로는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 「양해사항」, 「쇼와15년도 중요사항 예산통제대강」,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하여 대장성 당국의 구두설명 요지」, 「물자수요조사요강」이 첨부되어 있다.

극비문서로 분류된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은 “동아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임시군사비 추가에 대비하여”“적정한 전시예산 편성”이 긴요한 만큼 예산편성에 관한 5가지 자료에 기초하여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협력하라”⁷⁾고 전달하였다. 예산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7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신규경비의 요구에 대해서는 요사이 특히 사항을 엄선하여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금액은 이를 최소한으로 할 것.

6) 자원과장,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에 관한 건」(1939년 5월 2일) 자료 65번.

7) 정무총감, 「昭和15年度予算編成等ニ関スル件」(1939년 7월 10일). 39번 자료

가) 신규경비의 소요재원은 가능한 이를 기정경비의 절약으로 충당할 것

3. 물자, 노력(勞力), 자금 및 물가 등에 관한 경제 제(諸)방침과 조화를 꾀하여 전시경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다) 신규요구에 따른 물자의 단가에 대해서는 쇼와14년도 예산단가의 범위 내에서 인하도록 많이 노력할 것

6. 세제(稅制)를 개정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를 꾀할 필요가 있는 정황을 고려하여 각 성에서도 보통 세입의 증가에 노력하고 그리고 각 특별회계에서는 임시군사비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다액을 이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⁸⁾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한 제1번 규정이다. 물론 문장의 표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항목의 신규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기존의 경비 역시 가능한 절약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앞에서 본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에서 관청의 수요물자를 전년대비 50%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어서 「양해사항」에서는 각 성의 예산편성 담당자에게 공채발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필요한 경비는 가능한 절약하여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다.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이 예산편성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면 「쇼와15년도 중요사항 예산통제대강」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3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나사변의 목적달성, 동아신질서 건설 및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한 대처를 목표로 한 정부 각 부처의 시설을 지나사변 처리, 군비 충실, 무역 진흥, 생산력 확충, 국가총동원 실시 및 후방 제(諸)정책에 집중할 것
위 취지에 기초하여 신규 및 기존의 경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여 철저하게 조정할 것
2. 물자, 자금 및 노무의 수급 관계, 국제수지 상황, 물가의 추세 등을 충분히 교량(較量)하여 국가 종합 경제력에 입각한 계산을 책정할 것
3. 국가총동원체제에 적응하고 국가총동원 계획의 설정과 예산의 책정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할 것⁹⁾

8) 정무총감, 「昭和15年度予算編成等ニ関スル件」(1939년 7월 10일). 39번 자료. 인용문 가운데 ■는 판독 불가능한 글자를 의미함.

9) 정무총감, 「昭和15年度予算編成等ニ関スル件」(1939년 7월 10일). 39번 자료.

즉, 「쇼와15년도 중요사항 예산통제대강」에서는 중일전쟁의 목표인 ‘동아신질서 건설’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 부처는 ‘지나사변 처리, 군비 충실, 무역 진흥, 생산력 확충, 국가총동원 실시 및 후방 제(諸)정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신규 사업 혹은 기존의 실행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국가총동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한다.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하여 대장성 당국의 구두설명요지」는 예산편성에 관하여 문서로 보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며, 「물자수요조사요강」은 각 부서가 편성한 예산에 기초하여 필요한 물자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상세내용이다.

3. 휘발유의 배급·통제 실태

1938년 4월 1일 제정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1939년 3월 26일자로 앞에서 살펴본 「물가통제의 대강(안)」이 작성되었다. 이 안은 수정을 거쳐 4월 24일 「물자통제의 대강」으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국가총동원법에서 제시한 목적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완비되면서 조선총독부는 1939년 4월 6일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을 통해 1939년도에 각 관청에서 필요한 물자 수요량의 50%를 절감한 물자수요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를 받은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은 4월 8일 도쿄에 있는 총독부 사무소의 자원과장에게 전달받은 원안대로 작성하겠다는 전보안을 보냈다. 이상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이처럼 국가총동원법 실시 이후 각 관청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무려 50%나 절감해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여기서 조선총독부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사례가운데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휘발유의 배급통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휘발유는 전쟁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물자이면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전쟁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양면을 동시에 유추할 수 있는 물자이기도 하다.

조선총독부 식산과장은 1939년 7월 7일 법무국 법무과 서무계에게 「관청용 휘발유 소비절약에 관한 협의회(打合せ) 개최에 관한 건」을 통지하여 이 모임에 법무국에서도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문서에 의하면 협의회는 1939년 7월 20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개최예정이었다. 협의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관서(官署)용 휘발유 할당제 초안」에 관한 사항이었다. 식산과장은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에서 석유수요는 각종 산업 교통 문화의 향상 발전에 따라 매년 격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물동계획 결정에 의해 그 공급은 현저하게 삭감되어 이번 년도에는 전년도 개정 물동계획에 의거한 수량에 비하여 약 28%(단 인조석유는 포함하지 않음)를 감액하게 되었다. 그 대부분이 해외 수입품인 관계상 시국 상황으로 이러한 절감을 보이는 것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연히 조선 내에서 석유 소비규정도 이후 위 수량을 기초로 하여 더욱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¹⁰⁾

즉 식산과장은 휘발유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후의 물동계획에 따라 휘발유 공급량이 전년에 비하여 28%나 삭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4, 5, 6 월분 공급량이 삭감 없이 지급되어 7월 이후의 공급량은 그 부족분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전보다 절약하면서도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하니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식산과장이 발송한 「관청용 휘발유 소비절약에 관한 협의회(打合會) 개최에 관한 건」에 첨부되어 있는 「관서(官署)용 휘발유 할당제 초안」은 이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관청용휘발유할당제」로 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청용휘발유할당제」문건은 법무국장이 1939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식산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 첨부되어 있다. 문서가 작성된 날짜, 작성주체, 문서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초안’이 협의회를 거쳐 ‘성안’으로 확정되자 확정안에 기초하여 법무국장이 각 법원의 휘발유 수요조사를 생하고 그 결과를 식산국장에게 전달하면서 ‘성안’을 첨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관청용 휘발유 할당제

1. 방법

관청에서 사용하는 휘발유의 구입 시에는 일정 기간 내의 소요수량을 명기하고 별도로 기록한 증명관청에 제출하여 할당증명을 받아서 이를 제시하여 구매업자에게 구입한다.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청이라고 하더라도 위 할당증명서의 제시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시달함.

4. 할당

각 관청에서 할당증명의 요구를 받은 증명관청은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이를 심사하고 이를 감액해야만 한다.

위 일정 기준은 본부(本府)에서 통보함

5. 증명관청

증명관청은 매년 할당 증명해야 할 수량을 집계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부(식산국장 앞)에

10) 조선총독부 식산과장, 「官庁用揮發油消費節約ニ關スル打合會」(1939년 7월 7일). 35번 자료.

보고함.¹¹⁾

7월 20일에 실시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의하면, 할당증명제도는 9, 10월분 수요량부터 적용하여 실시하니 증명관청은 휘발유의 용도별 수량을 조사하여 7월 말까지 식산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단, 이 협의회에서 각 관청에 적용할 휘발유의 할당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이후에 본부에서 통보한다고 하였다. 추측할 수 있는 할당 기준은 「관청용 휘발유 소비절약에 관한 협의회(打合會) 개최에 관한 건」에서 식산과장이 말한 전년대비 28% 삭감에 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1939년 4월 6일 자원과장이 본부(本府) 각 국장, 전매국장, 회계과장에게 보낸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에서 말한 50% 삭감에 비하여 거의 반수준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후에 본부에서 통보한 할당기준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총동원관계철에 있는 서류에서 본부에서 통보한 명확한 할당기준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법무국장이 1939년 8월 31일에 작성하여 각 복심법원장, 형성, 평양, 대구를 제외한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는 할당기준을 추측할만한 내용이 있다. 협의회 논의의 거쳐 결정된 「관청용 휘발유 할당제」가 첨부된 1939년 7월 31일자 문서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보다 겨우 한 달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본부에서 통보한 할당기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법무국장이 작성한 1939년 8월 31일자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는 식산국장이 1939년 8월 25일자로 법무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이란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첨부문서에는 “9, 10월분 관청용 휘발유 할당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¹²⁾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자동차용 승용	1일 당	보통	2.7리터	
		소형	0.5리터	11,532리터
	화물용	1일 당	10.0리터	16,800리터
1. 가솔린 기관차용				800리터
1. 그 외				240리터
합계				29,372리터 ¹³⁾

11)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關スル件」(1939년 7월 31일). 54번 자료.

12) 식산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關スル件」(1939년 8월 25일),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關スル件」(1939년 8월 31일)의 첨부자료. 28번 자료.

위의 자료에서 보통 승용차의 하루 휘발유 필요량 평균 2.7리터의 한 달(30일) 분량은 81리터이며, 두 달(61일) 분량은 164.7리터이다. 역시 화물차용 하루 휘발유 평균 10.0리터의 한 달 혹은 두 달분 분량과 16,800리터라는 숫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용 휘발유 항목의 가장 뒤에 있는 숫자 11,532리터와 화물차용 휘발유 항목의 뒤에 있는 숫자 16,800리터가 어떠한 의미인지 위의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승용차와 화물차의 하루 평균 휘발유 할당량은 2.7리터와 10.0리터를 알 수 있다.

법무국장이 작성한 1939년 8월 31일자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는 각 지방법원별로 할당된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와 할당 기준을 제시한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 각 지방법원별로 휘발유 요구수량과 할당수량이 기재된 「휘발유 할당 수량표」가 있다. 먼저 할당 기준을 제시한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 자동차 1대 1일 평균 2.7리터
 2. 자동차 1대 2개월 평균 162.0리터
- 이를 할당한 표준
- A 1대 평균에 대하여 고등법원 50% 할증
1대 평균에 대하여 복심법원 40% 할증
 - B 1대 평균에 대하여 지방법원 내 1대는 평균보다 7리터 삭감하여 155리터
 - C 1대 평균에 대하여 지방법원 내 1대에 대하여 정차장의 거리를 참작하여 C표 대로¹⁴⁾

여기에 제시된 승용차의 하루 필요 휘발유 평균 소요량은 2.7리터이다. 이 기준은 앞에서 본 1939년 8월 25일자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과 동일하다. 그리고 법원의 등급과 소재지에 따라 휘발유 사용량의 가감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겠지만 각 지방법원의 승용차 소유 대수는 경성지방법원의 3대, 대전지방법원의 1대를 제외하면 모두 2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의 B와 C는 각 지방법원이 보유한 2대의 승용차 가운데 한 대는 승용차의 2달 평균 휘발유 할당량 162리터 가운데 7리터를 삭감하여 155리터를 지급하고(B규정) 다른 한 대에 대해서는 정차장의 거리를 참작하여 휘발유를 할당한다(C규정)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법원별로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¹⁵⁾가 작성되었다. 이 표는 아래와 같다.

13) 식산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關スル件」(1939년 8월 25일),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關スル件」(1939년 8월 31일)의 첨부자료. 28번 자료.

14)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關スル件」(1939년 8월 31일)의 첨부자료. 28번 자료.

15)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關スル件」(1939년 8월 31일)의 첨부자료. 28번 자료.

9월 10월 분 회 발 유 할 당 수 량 표	청 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계	1
		고 등 법 원	경 성 북 심 법 원	경 성 지 방 법 원	평 양 북 심 법 원	평 양 지 방 법 원	대 구 북 심 법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함 흥 지 방 법 원	청 진 지 방 법 원	신 의 주 지 방 법 원	해 주 지 방 법 원	부 산 지 방 법 원	광 주 지 방 법 원	전 주 지 방 법 원			
9월 10월 분 회 발 유 할 당 수 량 표	대수	1	1	3	1	2	1	2	1	2	2	2	2	2	2	2	2	26	2
	A	81	64		64		64											3	
	할 리 터	2 4 3	2 2 6		2 2 6		2 2 6											9 2 1	4
	B			14		7		7	7	7	7	7	7	7	7	7	7		5
	할 리 터			3 1 0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8 60	6
	C			1.5		1.2		1.4	0.8	1.1	2.2 5	2.1 0	0.5	1.8	1.3	0.9		7	
	할 리 터			12		23		-	89	35	59	41	84		12	58		8	
	리 터			1 7 4		1 3 9		1 6 2	73	1 2 7	2 2 1	2 0 3	78	-	1 5 0	1 0 4	1,4 31	9	
	계	305																	
	할 리 터	81 3	64 6	1 6 0 4	64 6	30 4	64 6	7 7	96 8	42 2	52 6	34 8	91 3	1 6 9 5	19 5	65 9		10	
	지출관 별	953			520		543		2 2 8	2 8 2	3 7 6	3 5 8	2 3 3	1 5 5	3 0 5	2 5 9	4,2 12	12	

위의 표에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표의 각 항목을 지정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자가 임의로 추가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c×2’라고 표기하면 경성지방법원의 자동차 대수 ‘3’을 표기한 부분을 지칭한다. 먼저 「쇼와 14년 9월, 10월분 회발유 할당표」에서 제시된 기준과 함께 이 표를 살펴보자.

이 표에서 우선 구분되는 것은 고등법원과 복심법원은 「쇼와 14년 9월, 10월분 회발유 할당표」에서 A로 구분한 곳으로 분류하여 위의 표에서는 ‘A할당’항목에서 표기하고 있다. 그 외의 지방법원은 「쇼와 14년 9월, 10월분 회발유 할당표」에서 제시한 B와 C의 기준에 따라 ‘7리터를 삭감하여 155리터를 지급’한다는 ‘B할당’과 ‘정차장의 거리를 참작’하여 가감한다는 ‘C할당’부분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A할당’부분을 살펴보자. ‘a×3’에 표기된 81은 고등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2개

월 평균 사용량인 162리터의 50%를 할증한 분량이다. 'b×3', 'd×3', 'f×3'에 표기된 64는 복심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2개월 평균 사용량인 162리터의 40% 할증한 분량이다. 따라서 'a×4'에 표기된 243은 승용차 한 대당 2개월 평균 사용량인 162리터에 고등법원 할증분량 81리터를 더한 수치이다. 동일하게 'b×4', 'd×4', 'f×4'에 표기된 226은 승용차 한 대당 2개월 평균 사용량인 162리터에 복심법원 할증분량 64리터를 더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B할당'부분을 살펴보자. 세로축 5번 칸에 있는 14와 7은 '지방법원 내 1대는 평균보다 7리터 삭감하여 155리터'로 한다는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경성지방법원은 자동차가 3대, 대전지방법원은 1대, 그 외의 지방법원은 자동차가 2대이다. 대체로 지방법원에는 자동차가 2대 배정되어 있으며 경성은 소재지의 특성상 다른 지방법원보다 한 대가 더 많은 3대 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동차 2대 가운데 한 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7리터를 삭감하였으며 경성지방법원은 그 두 배인 14리터를 삭감하였다. 특히 대전지방법원에는 자동차가 한 대뿐임에도 불구하고 7리터를 삭감한 것과 경성지방법원의 경우는 자동차가 3대인데 14리터를 삭감한 것을 합쳐서 생각하면 지방법원의 자동차에 대한 삭감 단위는 1-2대, 3-4대처럼 2대를 하나의 단위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리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c×6'의 숫자 310리터는 지방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2달 휘발유 할당량 155리터의 정확히 두 배이기 때문이다. 즉 경성지방법원의 자동차는 다른 지방법원에 비하여 1.5배 많지만 휘발유의 삭감량과 지급량은 두 배가 많다.

마지막으로 'C할당'부분을 살펴보자. 'C할당'부분에서는 각 지방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교통사정을 고려하여 세로축 7번에 있는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 세로축 7번에 있는 수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수치와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적용하여 세로축 8번의 값이 되었는지 그 결과 세로축 9의 값이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세로축 5번과 8번을 합치면 10번의 값이 되며, 세로축 6번과 9번을 합치면 11번의 값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각 지방법원의 'B할당'과 'C할당'의 수량을 비교하면, 'B할당'의 승용차 한 대당 평균 휘발유 할당량인 155리터보다 'C할당'의 값이 더 큰 것은 신의주, 청진, 대구지방법원 3곳뿐이다. 'C할당'에 적용된 구체적인 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의 C기준은 B보다 더 엄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2대임에도 불구하고 'C할당'에 해당하는 세로축 8번과 9번 값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축 10번 값은 169로 되어 있

다.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한다면 ‘m×8’에는 162의 숫자가 표기되어야 한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의 경우는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한 대임에도 불구하고 ‘B할당’부분에 속하는 세로축 5번과 6번 값과 ‘C할당’부분에 속하는 세로축 8번과 9번 값이 존재한다. 즉 소유한 승용차가 한 대뿐이라면 ‘B할당’이나 ‘C할당’의 어느 한 곳에만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1939년 9월 18일에 작성된 「쇼와15년도 관청용 석유수요량 조사의 건」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1940년에 승용차가 한 대 더 배당된다.¹⁶⁾ 따라서 위의 표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세로축 8번과 9번의 수치는 잘못 표기되었거나 아니면 대전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관한 내용이 서로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지방법원의 세로축 7번에는 수치가 표기되어 있으면서도 세로축 8번의 대구지방법원과(‘g×8’) 부산지방법원(‘m×8’) 항목에는 수치가 없다. 그 이유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위의 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선총독부는 법원의 등급과 각 지방법원이 위치한 소재지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배당량을 증감하였으며, 그 결과 승용차 한 대당 할당된 평균치 보다 적은 량의 휘발유를 배급통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월 31일에 작성된 1일 할당 기준에 의거하여 각 법원이 신청한 휘발유 소요량을 살펴보자. 국가기록원 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란 명칭의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 이 명칭으로 작성된 문서는 크게 1939년 9월과 10월분¹⁷⁾ 그리고 11월과 12월분¹⁸⁾ 각 법원의 휘발유 필요량을 작성한 것으로 각각 2개의 문서 군으로 나누어 편철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각 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경성복심법원, 해주와 대전 지방법원의 1939년 9월과 10월분 휘발유 증명 요구에 관한 문서를 살펴보자. 이 문서에 표기된 각 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할당 증명요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⁹⁾

법원명	하루 요구량	일(日) 수	전체량
경성복심법원	2.36	61	143.9
해주지방법원	1.8	60	108
대전지방법원	4	53	216

16) 법무국장, 「昭和15年度官庁用石油需要量調査ノ件」(1939년 9월 18일). 16번 자료.

17) 「휘발유할당증명요구서」, 26번 문서.

18) 「휘발유할당증명요구서」, 5번 문서.

19) 「휘발유할당증명요구서」에 의거하여 작성, 26번 문서.

경성복심법원은 승용차용 휘발유에 대한 산출기초를 하루당 2.36리터 61일분 143.9리터를 신청하였다. 한편 해주시방법원은 하루당 1.8리터 60일분 108리터를 신청하였다. 두 법원의 신청량 기준은 앞에서 본 승용차 1일 할당기준 2.7리터보다 적으며 법원에 따라서 두 달을 61일 혹은 60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의 휘발유 증명 요구서에는 승용차 하루당 4리터 54일분 216리터를 신청하였다. 이 할당 기준은 승용차 하루 할당기준 2.7리터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다. 그리고 특이하게 두 달을 54일로 계산하고 있다. 신청 기준이 하루 할당기준을 상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의 경성복심법원이 작성한 문서(문서번호 裁會第1269號)에는 검찰용 승용차로 판단되는 2대를 제외하면 3대의 승용차가 표기되어 있다. 앞에서 본 각 지방법원별로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를 참고로 하면 이 승용차 숫자는 아마도 경성지방법원의 것일 수도 있으나 서류작성 주체가 명확하게 경성복심법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성복심법원의 승용차 숫자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만약 경성복심법원과 지방법원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양 법원의 수요량을 합쳐서 복심법원장의 이름으로 신청했다고 한다면, 복심법원과 지방법원의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용차의 숫자는 총 4대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경성복심법원의 차량 대수가 1대에서 3대로 늘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11월과 12월분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를 참고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아래에서 살펴보는 문서에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의 할당 증명요구는 존재하지만 경성지방법원, 평양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의 할당 증명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서 상세하게 보겠지만 평양복심법원이 요구한 전체 할당 증명요구량 540리터는 위의 각 지방법원별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에 제시된 평양복심법원 수요량 226리터(‘d×4’)와 평양지방법원 B할당 수요량 155리터(‘e×6’)와 평양지방법원 C할당 수요량 139리터(‘e×9’)의 합산량인 520리터보다 20리터 많다. 이와 유사하게 대구복심법원의 경우도 11월과 12월분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에서 요구한 549리터는 위의 각 지방법원별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에 제시된 대구복심법원의 수요량 226리터(‘f×4’)와 대구지방법원의 B할당 수요량 155리터(‘g×6’)와 대구지방법원 C할당 수요량 162리터(‘g×9’)의 합산량인 543리터보다 6리터 많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경성복심법원이 작성한 문서(문서번호 裁會第1269號)에는 경성지방법원의 수량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각 법원의 11월과 12월분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를 살펴보자. 이 문서에 표기된 각 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할당 증명요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승

20) 「휘발유할당증명요구서」에 의거하여 작성, 5번 문서.

용차 한 대당 할당 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법원의 경우는 위의 각 지방법원별로 「9, 10 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에 제시된 전체 소유 차량수와 대당 평균을 표기하였다. 단 평양복심법원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를 근거로 평양복심법원과 평양지방법원의 승용차를 합산한 숫자를 표기하였다.

법원명	하루 요구량	일(日) 수	전체량	차량수	대당 평균
경성복심법원	2.36	61	144.5		
평양복심법원			540	3	180
대구복심법원	3.0	61	549		
	2.0				
	4.0				
대전지방법원	6.0	60	360		
함흥지방법원			140	2	70
청진지방법원	1.1	61	144		
신의주지방법원	2.7	61	329.4		
해주지방법원	3.6	60	216		
광주지방법원	4.0	61	244		
전주지방법원	3.246	61	270		
	1.18				

1939년 10월 5일자로 작성된 경성복심법원의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는 이전의 9월과 10월분 할당 증명요구서 작성 때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하루당 2.36리터 61일분 144.5리터를 신청하였다. 이 기준에 따른 계산값은 143.9리터이지만 144.5리터를 요구하였다. 반올림하였다고 하더라도 144리터가 되어야하는데 왜 144.5리터를 요구하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경성복심법원의 경우는 이전의 9월과 10월분 할당 증명요구서 작성 때와 동일하게 3대의 승용차별로 차종, 년 식, 마력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하루 평균 휘발유 할당량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복심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의 경우는 승용차의 종류에 따라 하루 평균 휘발유 할당량을 다르게 적고 있다. 즉 대구복심법원의 경우 스추도베카 집차형 승용차 35년식 8기통 30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을 3리터로, 닛수 집차형 승용차 31년식 8기통 24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을 2리터로, 테라프렌 집차형 승용차 37년식 6기통 22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을 4리터로 산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우는 스추도베카 코만드에이트 집차형 승용차 35년식 8기통 103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을 3.246리터로, 올츠모비루 황형(愧型) 승용차 6기통 21.3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을 1.18리터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산정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승용차 한 대당 1일 평균 휘발유량을 표기하지 않은 평양복심법원과 함흥지방법원의 경우 승용차 보유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리터 증가이며 함흥지방법원은 위의 각 지방법원별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에 제시된 B할당 수요량 155리터('i×6')와 C할당 수용량 127리터('i×9')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양을 신청하였다. 청진지방법원의 경우는 하루 1.1리터 61일분은 67.1리터인데 72리터로 신청하였다. 단순한 계산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앞에서 본 법무국장이 1939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식산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서도 청진지방법원의 경우는 1939년 9월과 10월분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에서 하루 1.1리터 61일분은 67.1리터인데 72리터로 신청하였다. 위의 표에 의하면 대전, 해주, 광주 지방법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승용차 하루 평균 2.7리터에 지역별로 B할당과 C할당의 수치를 고려한 값과 그리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휘발유 휘발유 배급통제 실태의 분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①식산국장이 1939년 10월 16일자로 본부(本府) 각 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을 살펴보자.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이 문서의 뒤쪽에 첨부된 문서로 ②법무국장이 1939년 11월 4일에 작성하여 각 복심법원장과 경성, 평양,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 각 지방법원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과 그 뒤쪽에 ③식산국장이 1939년 10월 31일에 법무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이 있다. 이 문서철의 날짜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다. 즉 가장 나중에 보낸 문서의 근거문서로 그 이전에 보낸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관공서의 문서작성 원칙이므로 국가총동원관계철에서 제공하는 문서 형식이 성립하려면, ②③①의 순으로 철해져야만 한다. 즉 법무국장이 1939년 11월 4일에 작성하여 각 복심법원장과 경성, 평양,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 각 지방법원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서 각 법원별로 “쇼와14년도 11월 12월 분 관청휘발유 할당이 별지”와 같이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식산국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11월과 12월분 관청용 휘발유 전체량을 고지한 ③의 문서와 ③의 근거가 된 문서 즉 식산국장이 본부의 각 국장에게 각 관청별로 11월과 12월분 휘발유의 할당 수요를 조사하여 10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①을 첨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¹⁾

문서 ②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다.

11월 12월분 휘발유 할당표

1. 할당 총수 5천리터

21) 그 외에 ①에는 청진지방법원장이 1939년 11월 2일자로 법무국장에게 보낸 「관청수요에 기초한 물자수입 상황 조사에 관한 건」이라는 보통강강제, 특수강강제, 석탄, 목재, 휘발유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날짜와 문서의 내용으로 봐서 전혀 별도의 건이라고 판단된다.

1. 자동차 수 26대

1. 한 대당 2개월 평균 185리터

위를 할당하면 아래와 같음.

A 고등법원, 복심법원은 1대 평균의 50% 할증

B 지방법원 소유 차량 가운데 1대(경성 2대)는 평균 리터로 함

C 지방법원 소유 차량 한 대는 정차장과 청사와의 거리를 참작하여 증감함(기본)

별항 증감

1. 경성은 본래 사무상 이용하는 것 외에 이번의 이동에 따른 소비량을 참작하여 40% 할증.

2. 대전은 본부(本府)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기 때문에 송■에 소비하는 90리터 가산.

3. 함흥, 청진, 신의주는 요구액이 근소하여 감량함.

4. 부산은 사용량이 없다고 신청하였으므로 할당하지 않음.²²⁾

이 내용에 따르면, 이번의 11월 12월분 휘발유 할당에서는 이전에 복심법원에 대해서는 40%만 할증을 했으나 이번에는 고등법원과 동일하게 50%를 할증하였다. 그리고 지방법원이 소유한 승용차 가운데 한 대는 7리터를 삭감하지 않고 평균 사용량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경성과 대전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이유로 증액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식산국장이 1939년 8월 25일자로 법무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는 승용차용 휘발유의 총량이 11,532리터였으나 ③의 문서에서는 승용차 휘발유 총량이 13,350리터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正ニ關スル件」(1939년 11월 4일), 1번 자료.

【토론문】

국가총동원법 실행 이후 휘발유 배급통제 실태분석에 대한 토론

이 형 식 (고려대)

영국 해군의 기술혁신(弩級전함(dreadnought))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은 전략자원으로서 석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석유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석유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대본영의 통수부가 본토결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축 석유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도 석유문제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발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총동원관계철」을 분석하여 조선에서의 휘발유 배급통제의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시기 석유문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시기 석유통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¹⁾ 따라서 본 발표는 1차 사료를 통해서 배급통제의 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토론자는 경제사에는 문외한이지만 본 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면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1. 석유 배급을 통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²⁾.

- 만주사변을 전후 일본 내 석유시장은 영미수입업체들이 2/3를 점유, 나머지 1/3을 자국 업체가 생산.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
- 중일전쟁의 장기화 - 미일관계의 악화 : 1939년 7월 미일통상항해조약 폐기 통고, 일소관계의 악화(장고봉사건-38.7, 노몬한 사건 39.5),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1939.9)
- 기획원에서 물자동원계획 입안 - 일본 제국 전체로 하달(top down)

1) 류상진, 「전시체제가 조선 내 석유통제와 배급단체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5, 2017

2) 橘川武郎, 『戦前日本の石油攻防戦』, ミネルヴァ書房, 2012.

2. 조선에서의 석유통제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본 발표의 전사)

- 1938년 1월 20일 조선총독부는 군 관계자를 포함한 휘발유소비절약회의를 개최해서 1) 목탄차 장려, 2) 관청용 차량의 운행 제한, 3) 차량과 운전자 수 증가 억제를 결정.
- 1938년 3월 7일 상공성령 제8호 '휘발유 및 중유 판매취체규칙'을 공포 5월 1일부터 소비자는 전표를 통해서만 휘발유와 중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선에서도 같은 해 6월 13일자 부령 제127호로 '휘발유 및 중유 판매취체에 관한 건'이 공포. 1) 휘발유와 중유의 판매 시 전표를 통해서만 가능 2) 1회 신청할 수 있는 양은 2개월분에 한정 - 할당증명제도.

3. 왜 국가총동원관계철 가운데 법무국 휘발유 배급통제를 선택했는가

- 이 사례의 사료적 가치

4. 조선총독부 기구에 대한 이해

- 소화14년도물자동원계획관청수요에관한건 東京總督府事務所 資源課長
- 4페이지에 등장하는 자원과장은 기획원의 자원국 자원과장이 아니라 총독관방 자원과장 단계 이쿠타로(丹下郁太郎).
- 8페이지 조선총독부 식산과장 - 식산국장. 당시 식산국에는 식산과장이라는 직책이 없음.
- 1938년 9월 식산국 안에 석탄과 석유에 대한 개발과 수급을 담당하는 연료과가 신설. 연료과장에는 야스다 소지(安田宗次)가 취임.³⁾

5. 기타

- 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대전은 본부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기 때문에 송?에 소비하는 90리터 가산
⇒ 대전은 본부로부터 保管 轉換을 받기 때문에 運搬에 소비하는 90리터 가산

3) 이 시기 조선총독부 관제에 대해서는 정준영, 「조선총독부의 "식산"행정과 산업관료」, 『사회와역사』 102, 2014. ; 이형식, 「조선총독부 관방의 조직과 인사」, 『사회와역사』 102, 2014를 참조.